Country Report 20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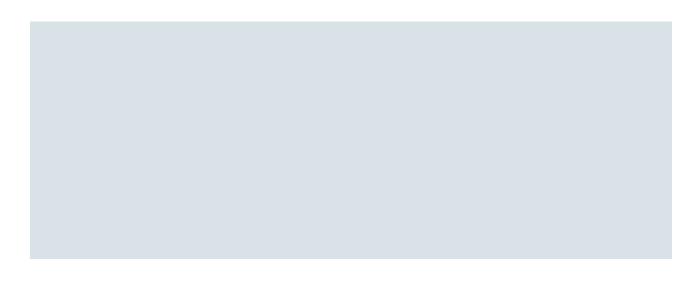
# **필리 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프리핀       차례          최근 주요 이슈       viii          요 약       x         I.일반개황       3       3         2.약사       4       4		
* 요 약       x         I.일반개황       3         1.국가개요       3         2.약 사       4	필리핀 차례	
* 요 약       x         I.일반개황       3         1.국가개요       3         2.약 사       4		
* 요 약       x         I.일반개황       3         1.국가개요       3         2.약 사       4		
I.국가개요       3         2.약 사       4		,
<b>1.국가개요</b> 3 <b>2.약 사</b> 4	<ul><li>호 보 약</li></ul>	Х
2.약 사 4	I.일반 개황	
	1.국가 개요	3
가. 연도별 약자	2.약 사	4
	가. 연도별 약사	4
나.주요 역사 단계별 요약	나.주요 역사 단계별 요약	5
<b>3.정부 형태</b> 9	3.정부 형태	9
가. 행정부	가. 행정부	9
나.시법부 11	나.시법부	11
다.의 회	다.의 회	12
라.지방행정	라.지방행정	14
<b>4.사회와 문화</b>	4.사회와 문화	16
가.지연조건 16	가.지연조건	16
나. 민족과 종교	나. 민족과 종교	17
다.교육 19	다. 교 육	19
라.노동	라.노동	21
마.보건복지	마. 보건복지	22
바. 언 론	바.언론	23
사.음식 24	사.음식	24

필리핀 차례	
5.우리나라와의 관계	25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1.경제상황 변천사	- 28
2.경제 동향	
가: 국내경제	33
나: 대외거래	- 37
다. 국제신인도및 대외지급 능력	44
3.정치·사회 동향	- 45
가. 정치 안정성	45
나. 사회 안정성	- 54
다. 대외 관계	- 59
라. 지역경제협력기구	. 61
Ⅲ. 주요 산업	
1. 산업 구조	64
2.농림어업	- 65
3.광업	- 68
4.제조업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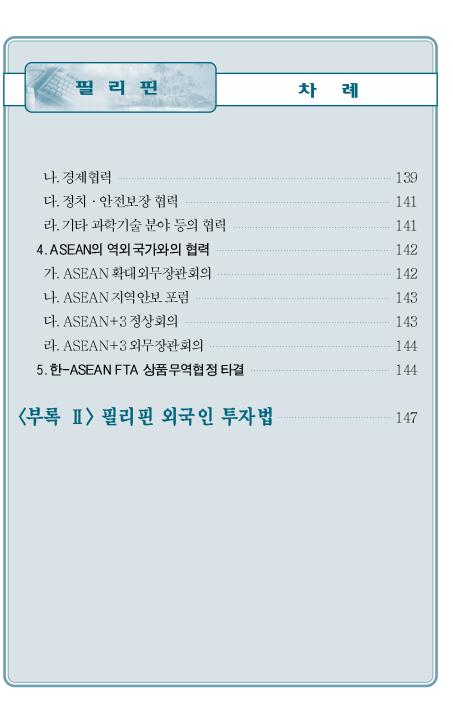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ii

필리핀 차례
<b>5.정보통신업</b> 73
<b>6.건설업</b>
7.금융서비스업 79
<b>8</b> . 소매유통업 84
<b>9</b> .관광업 84
Ⅳ. 외국인투자 환경
<b>1.외국인투자 정책 및 절차</b>
가. 외국인투자 정책 86
나. 투자관련법규
다. 투자 절차
라. 투자 유관기관
<b>2.투자우대정책</b> 97
가. 일반적 인센티브(세제)
나. 투자위원회(BOI)의 주요 인센티브 97
다. 산업별, 지역별 인센티브(투자장려 업종) 99
라. 투자규제 조치 101
<b>3.외국인투자 여건</b> 105
가. 무역제도
나.외환제도 111

필리핀 ★	ी <b>र</b>	녜
다. 금융제도		
라. 조세제도		
마: 노동여건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1.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2.진출확대 방안		
가. 수출 및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나. 수출 및 투자진출 유망분야		
다. 진출전략 및 정책과제		129
〈부록 I〉ASEAN의 개요 및 특징		

1. A SEAN의 설립 경위 및 배경	133
2. ASEAN의 기구	135
3. A SEAN의 역내협력	138
가: 역내협력의 목표	138



차 례



필리핀 그림차례	
<그림 Ⅱ−1>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29
<그림 Ⅱ-2>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30
<그림 Ⅱ−3> 총외채잔액 추이	31
<그림 Ⅱ−4> 경상수지 추이	32
<그림 Ⅱ-5>GDP 대비 정부 재정수지 추이	
<그림 Ⅲ-1> 필리핀 유선, 무선, 인터넷 가입자 현황(2005년)	
<그림 Ⅲ-2> 유선통신 가입자 현황(2005)	
<그림 Ⅲ-3> 연도별 유선전화 보급률	74

2006, 11)

# 최근 주요 이슈 ○ 아로요 대통령, 개헌을 통한 정국타개 시도 - 아로요 대통령은 친정부 세력인 하원과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정국은 불안한 실정임. - 야당은 아로요 대통령의 부정과 실정을 이유로 2007년 5월로 예정된 충선에서 압승을 거둬 재차 탄핵안을 발의하고자 하나, 실제 이러한 탄핵을 통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아로요 대통령은 불안한 정국 타개를 위하여 현행 대통령 중심 제, 양원제인 권력구조를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총리 중심의 의원내각제, 단원제로의 변경을 시도 중

그러나 대법원이 최근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은 불가하다는 결정
 을 함에 따라 개헌은 양원을 통과함으로써만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의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2007년 총선은 개헌없이 현 체제
 하에서 시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적자 대폭 감소

- 2006년도 예산법안의 통과가 4/4분기까지 지연되면서 2006년
   도 재정수지 적자폭이 대폭 감소. 2006년 재정수지/GDP 비율
   은 -1.6%로 예상되고, 최근 세법개정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내년
   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에는 동비율이 -0.8%,
   2008년 -0.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필리핀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재정수지 적자

문제 해결이 세입 증가가 아닌 세출 감소로 달성될 경우 사회 인 프라 구축지연과 빈곤악화 등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음.

### □ 전력산업 민영화 연기

 마신록 지역에 위치한 5억 6,200만 달러 상당의 석탄발전소 민 영화 추진이 실패로 돌아감. 그 결과 정부는 Napocor(National Power Corporation)의 발전관련 자산 70%를 매각하는 시한을 2008년말 까지 연기하였음. 그러나 현재 매각 실적이 2%에 불 과해 새로 설정된 시한까지 예정대로 매각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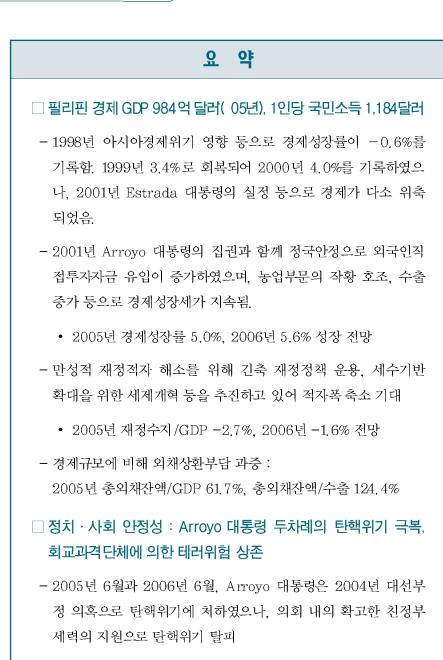
### □ 2007년도 경제전망

2007년에도 필리핀 경제는 2006년의 5.6%보다 약간 낮은
5.3%의 성장이 기대됨. 해외근로자의 송금유입으로 민간소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겠지만, 높은 이자율에 따른 민간
투자 위축과 재정수지 적자 부담으로 인한 정부투자 위축, 필리
핀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위축 등이 경제 전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소비자 물가는 점차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폭
도 2006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212 00120				
구 분	2005	2006 <sup>†</sup>	2007 <sup>f</sup>	2008 <sup>f</sup>
경제상장률(%)	5.0	5.6	5.4	5.3
물가상 <del>승률</del> (%)	7.6	6.6	5.5	5.0
재정수지/GDP(%)	-2.7	-1.6	-0.8	-0.5
상품수출(억 달러)	403	4 46	482	501
상품수입(억 달러)	480	494	530	551
경상수지(억 달러)	20	54	53	56
총외채(억 달러)	608	6 15	637	648
자료 : EIU				

필리핀 경제전망

2006, 11 )



- 민다나오섬 회교분리주의세력 등과의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음.

## □ 산업구조 : 취약한 산업구조 - 농림어업 14.4%, 제조업 23.4%, 서비스 53.0%

- 제조업에서 식품가공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부문의 경제비중은 농림어업보다 높으나 고용인원은 농림
   어업에 미치지 못함.
-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에 비해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국내 투자자
   금 조성이 원활치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 무역구조 : 전자제품 위주의 수출, 미국 및 일본에 집중된 무역거래

- 상품수출에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기준으로 67.8%를 기록하여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함.
  - 주요 수출품 : 반도체 등 전자제품 61.8%, 의류 5.3%, 코코 넛유 1.6%.
- 주요 교역대상국이 일본과 미국이며 2개 국가에 대한 수출규모가
   전체 수출에서 약 36%를 차지함.
  - 주요 수출국 : 미국 18.1%, 일본 17.6%, 중국 9.9%

### □ 투자진출 전략 : 목표시장을 선정한 후 투자진출 추진

- 내수시장 구매력이 취약함. 따라서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투자
   진출하는 경우, 목표시장을 먼저 선정한 후 투자진출전략 추진
- 투자유망 분야: ASEAN 시장진출에 유리한 산업,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 1. 국가 개요

	위 치 : 남중국해상 도서국
	면 적 : 300천 ㎢ (한반도의 1.3배)
일	기 후 : 고온디습한아열대성
	인 구 : 88백만명 (2005)
	수 도 : Mania (1.5백만명)
반	민 족 : 말레이족, 모로족, 네그리토족
	언 어 : 타갈로그어(공용어), 영어(공용어)
	종 교 : 가톨릭(83%), 기독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독 립 일 : 1946.7.4.(미국)
정	정 부 형 태 :대통령중심제
	국 가 원 수 : Gioria Macapagal Arroyo 대통령
	의 회 : 양원제(상원 24석,하원 212석)
치	주 요 정 당 : LAKAS, NPC(보수주의 연합), Laban
	국제 기구 가입 :IMF, IBRD, ADB, ASEAN, WTO, APEC 등
	G D P : 977억 달러(2005)
	1 인당 GDP : 1,111달러(2005)
	화 폐 단 위 : Peso (P)
	회 계 연 도 : 1.1 ~12.31
경	산 업 구 조 : (20.05) 서비스업 5.3%, 제조업 2.3.4%, 농림어업 14.4%
	주 요. 수 출 품 : (2005) 반도체 등전지 제품 68.8%, 의류 5.6%, 코코넛유 1.5%, 석유화학체품 1.0%
	주 요 수 입 품 : (2005) 반가공원재료 30.8%, 통신장비 및 전기기계 19.6%, 원유 5.7%
제	주요 수출국 : (2005)미국 18.1%,일본 17.6%,중국 9.9%
	주요 수입국:(2005)미국19.4%,일본17.2%,싱기포르7.9%
	주요부존자원 : 동,금,니켈,석유,목재
	경제 적 강점 : 풍부한천연자원 및 노동력
	경제 적 약점 : 지역간·계층간심한소득격차 취약한수출구조

### 2. 약 사

### 가. 연도별 약사

- 1521.3 : 마젤란의 필리핀 상륙 - 1571~1898 : 스페인 식민지 - 1896. 8 : 필리핀 혁명시작(스페인저항운동은 1860년부터 시작) - 1898. 6 :필리핀 혁명지도자 Emilio Aguinado에 의한 독립 선언 및 공화국정부 수립 -1898.12:미국·스페인의 파리조약에 의거 필리핀은 미국에 양도됨. - 1899~1902 : 필리핀의 대미국 항쟁 -1935.11 :필리핀 자치정부 출범(정부수반: Manuel L. Quezon) : 일본의 필리핀 침입 - 1941.12 - 1943.10 : 일본군정하의 괴뢰정부 수립(정부수반: Jose P. Laurel) - 1945. 2 : 미국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해방 -1946.7: 미국으로부터 독립(초대 대통령: Manuel A. Roxas) - 1950. 1 : Elpidio R. Quirino 정권출범, 미국원조로 전후복구 노력 - 1954. 1 : Ramon F. Magsaysay 정권 출범, 정치의 근대화와 민족주의 고취
- 1958. 1 : Carlos P. Garcia 정권 출범
- 1962. 1 : Diosdado P. Macapagal 정권 출범
- 1966. 1 : Ferdinand E. Marcos 정권 출범
- 1972. 9 : Marcos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한국수출입은행

L

- 1981. 1 : 계엄령 해제
- 1981. 6 : Marcos 대통령의 재당선
- 1983. 8 : 야당지도자 Benigno Aquino 상원의원 암살
- 1986. 2 : Marcos 독재정권 붕괴 및 Corazon Aquino 대통령 취임
- 1987. 2 : 국민투표로 필리핀 신헌법 제정 공포
- 1992. 6 : Aquino 대통령 재임시의 국방장관 Fidel V. Ramos 대통령 취임
- 1998. 6 : Joseph E. Estrada 정권 출범
- 2001. 1 : 국정운영능력 부족 및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Estrada 대통령의 축출 및 부통령 Gloria Macapagal Arroyo의 대통령 취임
- 2004. 6 : Gloria Macapagal Arroyo 정권 출범

### 나. 주요 역사 단계별 요약

### <1571년 스페인 정복 이전>

### □ 기원 전후 말레이계가 유입·정착, 원주민 네그리토(Negrito)는 산악 지대로 이주

- 산악, 섬 등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정착과정에서 소규모의 부락공동체
 (Barangay)가 자연스럽게 형성, 통일국가 미성립

### □ 15~16세기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슬람교도들의 이주

이슬람교도들은 Sulu열도로부터 민다나오섬 일대에 걸쳐 정착하였
 으며, 1565년경에는 마닐라 지역에까지 진출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Sultan 또는 Raja에 의해 지배되는 소규모 영토국가 성립

### <1571~1898년: 스페인 식민지배>

### □ 1521년 마젤란의 필리핀 사마르(Samar)섬 상륙

- 1521년 이후 스페인은 수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1571년 필리핀을 정복, 총독을 마닐라에 두고 약 330년간 식민지배
※ 필리핀이란 국명은 당시 스페인 국왕 Philip의 이름에서 유래하 는 것으로 알려짐.

### □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 전개

- 1860년 스페인 내란이 발발하자 필리핀의 대스페인 저항운동 시작
- 1892년 노동자출신 비밀결사 'Katipunan'의 무장봉기
- 1896년 필리핀 혁명
- 1898년 6월 12일 필리핀의 혁명지도자 Emilio Aquinaldo에 의한 독립선언 및 공화국정부 수립

### <1898~1945년: 미국 식민 지배>

### □ 1898년 12월 미국 · 스페인 파리조약 체결

- 스페인은 2천만 달러의 대가를 받고 필리핀에 대한 통치권을 미국에 이양

### □ 1901년 3월 23일 필리핀의 혁명지도자 Aquinaldo의 체포

- 필리핀의 미국에 대한 저항운동은 1902년까지 지속

### □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점진적 자치 허용

- 1916년 양원제 도입
- 1934년 Tydings McDuffie Act 제정을 통한 10년 후 완전독립 약속
- 1935년 11월 15일 Manuel L. Quezon을 수반으로 자치정부가 출 범하였으며, 그는 1942년 일본의 침략시까지 재임

### <1941~1946년:일본 점령기 및 독립>

### □ 1941년 12월 일본의 침략, 1945년 2월까지 점령

- 1943년 10월 14일 Jose P. Laurel을 수반으로 하는 괴뢰정부 수립

### □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 필리핀 공화국 건국

- 1945년 2월 3일 맥아더 장군은 Sergio S. Osmena에게 자치정부 이양
-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 필리핀 공화국 건국

### <1946년 공화국 건국 이후 Arrovo 현대통령 집권까지>

### □ 1972년 Marcos의 계엄령 선포에 의한 장기 독재집권이 시작되기 전까지 필리핀의 정권이양은 평화적으로 이뤄졌음.



### □ 1972년 Marcos의 계엄령 선포

- 1972년 9월 Marcos 대통령은 정부 전복세력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계엄령 선포
- 1983년 8월 21일 야당지도자 Benigno Aquino 상원의원이 미국 망명으로부터 귀국,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암살당함.
- □ 1986년 제 1 민중혁명(People Power Revolution: EDSA I)에 의한 정권 교체
- 1986년 2월 7일 Marcos의 조기선거 실시, 2월 16일 재당선 발표, 부정선거 규탄 민중시위의 계속
- 1986년 2월 25일 야당측 정·부통령 후보 Corazon Aquino(Benigno Aquino의 처)와 Laurel에 의한 Marcos의 당선 무효 선언, 자신들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서식 거행
- 따라서 Marcos 일가는 미국 하와이로 망명
- □ Aquino 대통령 이후, Ramos 대통령, Estrada 대통령은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국민직선으로 당선 집권

### □ 2001년 제 2 민중혁명(EDSA II)에 의한 정권 교체

- Estrada 대통령이 정국운영능력 부족,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의회
   탄핵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 2 민중혁명에 의해 축출됨.
- 2001년 1월 20일 Arroyo 부통령 대통령직 승계, 2004년 5월 10일 대통령선거에서 Arroyo 대통령의 승리

### 3. 정부 형태

### 가. 행정부

### □ 대통령(국가원수)

-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
- 피선자격: 필리핀 태생 국민으로서 최소 40세 이상이고 선거직전
   기준 국내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
- 임기:6년 단임제
- 대통령은 의회 동의를 거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회는 2/3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결할
   수 있음. 또한 대통령의 내각 임명은 의회임명인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함.
- 유고 시 권한승계 및 대행: 부통령이 잔여임기 승계, 대통령과 부통
   령이 동시 유고시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하되 보궐선거 시
   까지만 대행
- 현대통령 : Gloria Macapagal Arroyo (Lakas Coalition당, 2004년 5월 10일 당선, 6월 30일 취임)

### □ 부통령

- 피선자격:대통령 피선자격과 동일
- 임기:6년(1차 중임가능)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부통령 유고시 :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 중에서 후임 부통령 지명,
 단 상·하원의 과반수 인준 필요

- 현부통령 : Noli de Castro (Arroyo 대통령과동시 당선)

### □내 각

- 대통령이 임명하되, 의회 인준위원회의 동의 필요

### □ 감사원(Commission on Audit)

- 헌법에 규정된 최고 회계감사기관
- 감사원장(Chairman) 및 2명의위원(Commissioner), 15개 부서 및 14개의 지방 사무소로 구성
- 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단임제임.
- 총인원은 12,000여명으로 이 중 70%가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30%는 행정지원 담당
- 정부 및 산하기관의 재무상태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대 통령과 의회에 제출

### □ 옴부즈맨(Ombudsman)

- 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
- 옴부즈총감(Ombudsman), 옴부즈수석차감(Overall Deputy Ombudsman)과 각지역담당(Luzon, Visayas, Mindanao) 및 기능



분야(군대) 담당 옴부즈차감 등으로 구성

-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 단임제임.
- 정부관리들의 독직 및 부패(Graft and Corruption)를 조사하여 민형사, 행정소추 시행
- 정부내 비효율성과 독직부패의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책 권고

### 나. 사법부

### □ 대법원(Supreme Court)

-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판사로 구성
- 대법원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선고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
- 모든 결정은 10명 이상의 대법관 동의 필요

### □ 고등법원(Court of Appeals)

-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1개의 고등법원을 수도에 유지
- 구속적부심, 영장발급, 지방법원의 판결심사



### 🗆 지방법원

- 지역법원(Regional Trial Court): 8개
- 수도권법원(Metropolitan Trial Court): 17개
- 시법원(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29개
- 읍법원(Municipal Trial Court): 19개
- 시순회법원(Municipal Circuit Trial Courts): 10개

### 🗆 특별법원

- 회교법원(Sharia District Court): 3개
- 회교순회법원(Sharia Circuit Court): 11개
- 공무원범죄법원(Sandiganbayan): 1개
-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 1개

### 다.의 회

### □상원

- 필리핀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득표순으로 선출된 24명으로 구성
- 매 3년마다 12명씩 교체되고, 임기는 6년이며 1차중임만 허용
- 법률안 제안·심의·의결,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사
   결정권,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선전포고 동의, 조약 체결 및 사면에
   동의

### 🗌 하 원

- 25세 이상의 입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되고,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1선거구 1인선출(1선거구는 인구 25만명 기준), 지역구 210명과 소수정당대표 및 직능대표 등 총 250명 이내로 구성
- 대통령이 50명까지 직능대표 임명 가능
- 임기는 3년이며, 2차 중임까지 허용
- 법률안 제안·심의·의결, 예산안 및 공공채무관련 법안 심의, 탄핵
   소추 발의권

### □정 당

- Lakas Coalition(국민의 힘당 연립, 하원의석 79석), NPC(국민연합당,
   하원의석 42석), Kampi(자유필리편동맹당, 하원의석 35석),
   Liberty Party(자유당, 하원의석 34석)
- 정당은 선거나 정국운영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유력인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당정치의 기반 취약
- '인물정당'의 성격('old boys club')
  :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소수유력인물(가문)은 정권교 체에 관계없이 정치 및 사회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따라서 정강·정책중심의 '정책정당'이 아닌 유력인물(가문)을 중 심으로 한 '인물정당'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간 정책노선 에 차이가 별로 없음.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11)

- 각종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지명도, 인기 등에 의 해 결정되는 인기투표 양상
  - ※ Estrada 전대통령은 개인적 인기를 기반으로 대통령에까지 당선 되었으며, 국회의원, 주지사 등에 영화배우, 방송인, 운동선수출 신이 다수 포진
- 정당별 정책노선 차이가 없어 필요에 따른 정당간 이합집산이 수시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여 소속정당 교체
   도 빈번함. 특히 상원은 소속정당이 아닌 의원개인의 선택에 따라
   여-야로 구분되며, 하원 역시 대부분 당적에 관계없이 여권에 합류
   하는 경향이 있음.

### 라. 지방행정

### □ 기본 행정단위

-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2차 중임
   까지 허용
- 79개의 주(Province), 114개의 시(City), 1,496개의 읍 (Municipality), 41,945개의 동(Barangay)으로 구성됨.

### □ 13개의 지방구역(Regions)

- 중앙정부가 행정편의 상 분류한 것으로 행정단위는 아니며, 지방행
 정단위는 상기와 같이 주, 시(읍), 동으로 구분됨.

구 분	지 역 명	인 구(2005)
1	Ilocos	4,677
2	Cagayan Valley	3,135
3	Central Luzon	8,946
4	Southern Tagalog	1 3, 13 8
5	Bico I	5,223
6	Western Visayas	6,918
7	Central Visayas	4,021
8	Eastern Visa yas	3,442
9	Western Mindanao	3,059
10	No rthern Mindan ao	3,059
11	Southern Mindan ao	5,777
12	Central Mindanao	2,897
13	Caraga	2,334

### □ 3개의 특별지역(Region)

- 14개 시(City) 및 3개 읍(Municipality)으로 구성된 수도지역 (National Capital Region, Metro Manila)

	Caloocan, Makati, Mandaluyong, Manila, Pasay, Pasig, Quezon,
14개 시	Muntinlupa, Las Pinas, Marikina, Paranaque, Valenzuela,
	Malabon, Taguig
3개 읍	Navotas, Pateros, San Juan

- 6개주와 1개시로 구성된 코르딜레라 행정지역(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5개주(Sulu, Tawi-Tawi, Lanao del Sur, Maguindanao, Basilan)와 1개 시(Marawi)로 구성된 다나오 이슬람자치지역(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 □ 지방의회 (3년마다 선거로 선출)

- 주의회(Province Board):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
- 시/읍의회(Council):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
- 동운영위원회(Barangay Council): 6명의 의원으로 구성

### 4. 사회와 문화

### 가. 자연조건

### 🗌 위치와 지형

- 필리핀의 국토는 7,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섬은 이름 없는 암초이거나 산호초이고, 사람이 정착하고
   있는 섬은 880개 정도임.
- 그 가운데 루손섬과 민다나오섬이 가장 크고, 그 밖의 주요 섬으로
   는 양대 섬 사이에 있는 비사얀 제도의 7개 섬(사마르, 파나이, 레이 테, 세부, 보홀, 마스바테, 네그로스)과 민도로, 팔라완 섬 등이 있음.
- 지형은 필리핀의 최고봉인 아포산(2,954m)을 비롯하여 마욘, 탈
  등 여러 개의 화산을 가진 산지와 미국의 2배가 넘는 복잡한 해안선
  이 특징임. 특히 환태평양 화산대와 환태평양 지진대가 지나고 있
  기 때문에 화산이 많고 지진이 잦음. 또한 해안지대에는 곳곳에 산

호초가 발달해 있고, 태평양의 필리핀 해구(海溝)에는 세계에서 가 장 깊은 해연(海淵)의 하나인 케이프 존슨과 엠덴 해연이 있음.

### □기 후

- 열대 몬순형의 기후로 일년 내내 무덥고 습함. 계절은 보통 건기 (1~6월)와 우기(7~12월)로 구분되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건기 (3~6월), 우기(6~12월), 한기(12~2월)로도 분류하기도 함.
  - 건 기(1~6월):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로 5월의 경우 낮 온도가 35~40℃에 이름. 밤에도 기온이 그다지 내려가

지 않아 25℃ 수준을 유지함.

- 우기(7~12월):우기의 비는 순식간에 내렸다가 그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시기에 태풍의 영향을 받음. 비사야 지방, 민다나오 섬 북동부, 루손 섬 동해안에서는 매년 태풍에 의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한기(11~2월):겨울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여름에 비해서 비교적 기온이 낮고 비도 적음. 이 시기에는 우리 나라의 초가을 날씨처럼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함.

### 나. 민족과 종교

### 🗆 민 족

- 필리핀 국민은 말레이족을 근간으로 하여 중국인, 미국인, 스페인인
 및 아랍 혈통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음. 2005년 기준으로 필리핀
 인구는 8,800만명이며 각 인종의 구별은 거의 없음.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서구 국가의 오랜 식민 통치 역사와 무역 상인들의 혈통이 섞여 외 모와 문화 모두에서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혼합된 국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필리핀 국민의 특성 또한 이러한 혼합된 문화의 영향을 받음. 필리핀인들의 유명한 친족 정신은 말레이족 선조로부 터 물려받은 것이고, 긴밀한 가족 관계는 중국인으로부터 전해졌으 며, 경건한 신앙심은 16세기 기독교를 전파한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았음.

### □종교

- 필리핀의 종교문화권은 Luzon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83%) 및 신교
   (9%)의 기독교 문화권, Mindanao섬을 중심으로 한 회교(5%) 문화
   권, 그리고 북부내륙 고지대의 애니미즘(Animism) 문화권으로 대별
- 가톨릭은 1521년 마젤란이 내왕했을 때 최초로 전래되었으나 본격
   적으로 포교된 것은 16세기 후반임. 초기에는 주민의 가톨릭화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17세기 중반 경부터 가톨릭이 주민들 사이에 정
   착되기 시작
- 신교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스페인 전쟁때로 미국은 1899년 이후 필리핀 내 신교 포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가 톨릭교회의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던 성서를 각 언어로 번역하고, 교 육·의료분야 등에 적극 진출하였음. 20세기 초 독립적인 두개의 교단이 조직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 하나는 아 글리파(필리핀독립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1902년과 1914년에 각각 설립되었음.

이슬람교도는 인구의 5%이며, 주로 민다나오지역에 집중. 1380년
 경 Sulu군도를 시작으로 민다나오섬에 전파되고, 16세기 후반 루손
 남부지역까지 세력이 확장되기도 하였으나 스페인의 가톨릭화 정
 책으로 현재는 민다나오지역서에만 세력 유지

### 다.교육

### □ 약 사

- 필리핀 최초의 대학은 1611년 설립된 산토 토마스(Santos Tomas) 대학이며, 스페인 식민지시대에는 성직자들에 의한 종교 교육 위주로 시행
-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영유권을 이어받은 미국은 필리핀인에 대
   한 교육보급에 노력하여 공립 초·중등학교를 정비하고 1908년 필리핀 국립대학을 설립
- 1946년 독립한 필리핀은 1935년 헌법을 기반으로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공용어로 하는 독자적인
   교육 추진

### 🗌 학 제

- 필리핀의 학제는 초등학교 6(7)년, 중등학교 4년, 대학교 4년이
   기본(초등학교 6년은 의무교육)
-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6세이며,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중등교육 수료
   후 전국적인 예비고사와 각 대학의 입학시험 합격 필요

### \*학교 수(2005)

- 초등학교: 41,688개
- 중등학교: 8,091개
- 대학교(전문학교포함): 1,787개

### □특 징

- 중등교육까지는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수학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
  중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임. (문자해독율 : 95%)
  ※ 초등학교진학률 : 97%,
  중등학교진학률 : 73%
- 1,185개의 4년제 정규대학이 있으며, 대학 재학생 수는 240만명이
   고, 이 중 85%가 사립대학에 재학.(연간 대학졸업자 수는 약 35만명)
- 대학생의 40% 가량이 마닐라 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어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각

### □ 필리핀의 주요 대학

대학명	설 립 년 도	학생 수(2005년 기준)
University of Santo Tomas	1611년	34,000명
Ateneo de Manila University	1859년	7,371명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908년	24,000명
De La Salle University	1911년	13,000명
Philippine Women s' University	1919년	7,400명
Miriam College Foundation	1926년	2,300명
University of the East	1946년	33,500명
Lyceum of the Philippines	1952년	8,000명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1968년	2,168명

### 라도동

#### □ 기본정책

- 필리핀 정부는 노동자 보호, 완전고용 촉진, 평등한 고용기회 보장,
   노동단체 구성권과 단체협상 보장, 인간적인 노동조건 보장 등을 정 책의 목표로 설정
- 노동법은 1974년에 제정된 Labor Code를 중심으로 기존의 관계법 령을 종합

🗌 노조활동

- 최근 노조활동은 1990년대에 비해 급격히 줄어 들었으며,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 한정
  ※ 노사분규 건수가 1990년 183건에서 2004년 25건으로 감소
- 개별노조는 2004년 기준 15,193개, 가입자 수는 약 1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73만명(60%)이 메트로마닐라에 집중
- 필리핀 3대노조 연합은 필리핀노동조합회의 TUCP, 노동절운동 KMU, 자유농연합 FFF이며, 노동조합 수는 약 5,700여개로 추산
- 필리핀노조연합의 양대단체는 필리핀노동조합회의(TUCP)와 노 동절운동(KMU)인 바, TUCP는 1974년에 결성된 최대노조연합단 체로서 온건노선인 반면, 급진적 노선의 KMU는 정부와 대립하면 서 TUCP와도 불화 야기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노동고용부의 지역책임자(Regional Director)가 의장 이 되고 경제개발청과 상공부 책임자가 부의장이 되며 고용자 측과 피고용자 측 대표자로 구성되는 지역별 지역임금위원회(Regional Wage Board)가 결정
- 최저 임금수준은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메트로마닐라의
   경우 명목최저임금은 1일 325폐소 (2005.10.26,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 마. 보건복지

#### 🗌 주요 시책

- 보건 및 복지정책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사회복지개 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에서 관장
-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프로그램으로 기초건강 관리 프로그램, 임산
   부와 어린이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결핵관리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품질을 높이고 약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프로그램 마련
- 또한 빈곤충의 복지증진,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 장애자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시행 중

### □ 의료인력 및 시설현황

-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사 및 간호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인들의 수는 크게 부족하며 병원
   및 병상 수 등 의료인프라는 열악한 수준
  - 병원수 : 약 1,600여개 (병상수 70,000여 개)
  - 의료인력 : 의사 2,943명, 치과의사 1,943명, 간호사 4,724명, 기타 16,451명

### 바.언론

#### □개요

 - 언론계는 1986년 2월 혁명 후 전면개편이 이루어져 Marcos정권
 당시 폐간 또는 정간되었던 언론사가 복간되고 새로운 언론사가 창 설되는 등 자유언론을 구가하고 있으나, 신뢰도가 낮고 무책임함.

### □ 중앙 일간지

명 칭	설립일	언 어	발행부수
Manil a Bulletin	1900. 2. 2	영 어	300,000 부
The Philippine Star	1986. 7.28	"	285,000 부
Philippines Daily Inquirer	1985.12.9	"	280,000 부
Manila Standard	1987. 2.11	"	1 50,000 부
ManilaTimes	1945(1986)	"	1 00,0 00 부
Philippines Times Journal	1972.10.9	"	80,000 부
Malaya	1981.11.17	"	70,000 부
Today	1994. 1.10	"	1 00,0 00 부

### □ TV 방송국

- 국영 PTV(Ch4) 외에 민영방송국 5개 사가 있으며, 방송언어는 영어와 타갈로그어임.

명 칭[채 널]	설립일
AB S-CBN	1986.8
People s'Television(PTV)	1986.2
Associated Broadcasting Company(ABC) [5]	1992. 2
Greater Manila Area (GMA) [7]	1961.10
Radio Philippine Network (RPN) [9]	1969.11
Inter-Islan Broadcasting Corp. (IBC) [13]	1975. 2

#### □ 라디오

- 전국에 약 90개의 Network가 있으며, 방송국은 약 359개 사가 있음.
- 249개의 AM방송국, 105개의 FM방송국, 5개의 단파방송국이 있음.

## 사 음 식

- 필리핀의 음식은 한 마디로 중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그리고 미국
의 영향을 받은 동서양 음식문화의 혼합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지
역에 따라서는 그들 고유의 토착음식이 있으며 조리법과 맛에서 차
이점이 있음. 필리핀은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요리 재료의
종류와 조리 방법의 다양함에 있어서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
지 않음.

- 쌀이 주식을 이루고 있으며, '가타'라 불리는 코코넛 우유를 음식의 주재료로 사용함.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있는 룸피아 (Lumpia 롤빵), 팬싯 (Pansit 우동) 등의 대중적인 음식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임. 또한 3백년에 걸쳐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은 까닭에 레천 (Lechon 돼지구이), 메차도(Michado), 메뉴도(Menudo), 칼로스 (Callos) 등 스페인식 요리도 대중적인 요리로 자리잡고 있음.
- 공통적으로 필리핀 음식은 야채보다도 육류를 이용한 음식이 주를 이루며 그 중 생선요리와 닭요리가 대부분을 차지함. 가장 식탁에 많이 오르는 음식은 닭고기이고, 밥과 닭고기가 거의 주식에 가까운 데 바나나는 간식으로 즐겨 이용되고 있음.

##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49. 3. 3(북한과는 2000. 7. 12)

- 필리핀은 미국, 대만, 영국,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우방국
- 1954년 1월 19일 주필리핀 한국 공사관 설치, 1954년 11월 11일
   주한 필리핀 공사관 설치, 1958년 2월 1일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

### 🗌 인사 교류

#### < 한국측 인사 방필 >

박정희 대통령(1966. 10), 전두환 대통령(1981. 7), 김영삼 대통령 (1994. 11), 김영삼 대통령(1996. 11, APEC 정상회담 참석), 김대중 대통령(1999. 11,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및 국빈 방문), 노무현 대 통령(2005. 12, 국빈 방문)

### < 필리핀측 인사 방한 >

Ramos 대통령(1993. 5), Estrada 대통령(1999. 6. 국빈 방문), Arroyo 대통령(2003. 6, 국빈 방문)

#### □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

- 참전기간: 1950. 9. 19~1953. 5. 13
- 총 병력 : 7,148명(총 5개 보병대대가 1개 대대씩 교대 참전)
- 전사상자수: 전사 112명, 부상 299명, 실종 16명
-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1969.8), 문화협정(1973.4), 무역협정 (1978.11), 경제기술협력협정(1985.6), 과학기술협력 협정(1986.8), 이중과세방지협정(1986.11), 투자보장 협정(1996.9), 범죄인인도조약(1996.11), 형사사법공 조조약(2003.6) 등

#### □ 양국간의 주요 단체

- 필· 한친선협회(The Filipino-Korean Association): 1972년 7월 설립
- 한·필의원친선협회: 1985년 6월 설립
- 한·필민간경제협의회(The Korea-Philippines Economic Council) : 1978년 설립

🗆 교역 현황

<표 Ⅰ-1>

최근 대필리핀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3	2004	2005	2 00 6. 9	주요 품목
수 출	2,975	3,379	3,220	2,882	전기 전자장비, 기계류, 화학제품
수 입	1,964	2,120	2,316	1,665	전기장비, 기계류, 동·농산물 등

- 대필리핀 수출은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원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필리핀의 수출증가에도 다소 기여
- 최근 들어 대필리핀 수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필리핀
   투자진출이 저조한 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

####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06년 9월 누계(총투자 기준) : 704건, 748백만 달러
- 투자규모가 1998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999~2000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1/02년 급감한 이후
   신규 투자진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대필리핀 투자의 주업종은 전자, 통신장비, 화학 등 제조업 분야이
   며 CAVITE, BATAN 등 경제특구에 위치한 공단에 주로 입주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1. 경제상황 변천사

- 1946년 7월 독립 이후 1950년대 말까지 미국의 경제개발지침에 따라 민간주도형 경제재건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국제수지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대체상품 생산을 통한 공업화 전략을 채택함.
- 195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 경제개발정책은 식품산업을 비롯한 소비재 중심 국내제조업의 기반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 가됨. 그러나 1960년대 들어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인해 제조업 발전의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따라서 1966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Marcos는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장려법을 제정 발표하고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를 설립하였음. 또한 1970년에는 산업구조의
   재조정, 신수출시장개척, 신수출상품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장려법도 제정 발표하였음.
- Marcos의 경제정책이 주효하여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식품가 공업뿐만 아니라 섬유, 화학, 금속 등을 중심으로 조립제조업의



발전이 있었음. 이로 인해 1970년대에는 전체 수출에서 비전통 수출상품인 제조업 품목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적인 1차 산업의 상품 의 수출은 축소되었음.

 - 1972년 9월 계엄령 선포 이후 경제개발정책이 민간주도형에서 국가주도형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지 향형 중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및 대외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음. 1980년 세계 은행의 권고에 따라 무역, 투자, 금융제도의 개혁 등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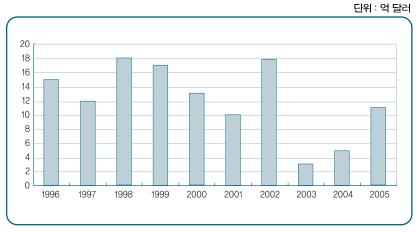


자료:EIU Country Report

 그러나 1983년 8월 Aquino 상원의원의 암살로 인해 정국이 극히 불안해지자 외자의 대량 해외유출로 대외지급능력의 심각한 취약 화가 초래되어 동년 10월 대외채무지불불능을 선언하게 됨. 1984 년과 1985년에는 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악 화되었음.

- 1986년 Corazon Aquino 정권이 출범하면서 빈곤퇴치, 고용창출,
   평등 및 사회정의 구현, 지속적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
   발 6개년계획을 추진함. 특히 경제운영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
   형으로 전환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해 조달하였음.
- Aquino 정권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급속히 회복
   되어 실질 GDP 성장률이 1987년 5.1%, 1988년 6.3%, 1989년
   5.6%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활기를 되찾았음.
- 그러나 잦은 쿠데타 발생에 따른 정정불안, 가뭄 태풍 화산폭발 등
   의 자연재해, 과중한 대외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점차 어려워
   지게 되었으며, 1991년 초 IMF의 6억 3,380만 SDR 차관 지원과
   함께 엄격한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으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199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8%를 기록하였음.

외국인직접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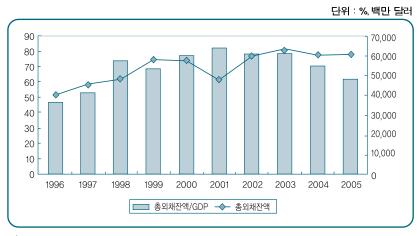


<그림 Ⅱ-2>





- 1992년 집권한 Ramos 대통령은 2000년까지 필리핀 경제의 신흥 공업국(NIEs) 대열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필리핀 2000'이라는 경제 개발 6개년계획을 추진하였음.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Aquino 정권 시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외국인투 자환경 개선,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음.
- Ramos 대통령의 경제정책 추진성과는 실질 GDP 성장률이 1992
   년 0.3%에서 출발하여 1996년 5.5%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었음. 그렇지만, 과중한 대외채무부담,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기조 등과 같은 경제난제는 해결하지 못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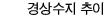
<그림 Ⅱ-3> 총외채잔액 추이

#### 자료 : EIU Country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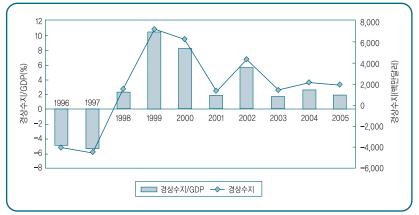
- 1998년에 출범한 Estrada 정권은 빈민층 지원정책을 집중 유세하 여 권좌에 올랐으며 집권초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Ramos 정권하의 기조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1998년은 아시아경제위기의 여파, 농업 부문의 흉작, 소비수요 감소, 투자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6%로 나타났음.

한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자 대외거래도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상수지는 만성적 적자기
 조에서 흑자로 반전되었음.

<그림 Ⅱ-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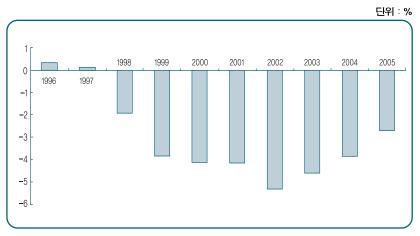


단위 : %, 백만 달러



자료 : EU Country Report

Estrada 대통령은 2001년까지의 재임기간 동안 본인의 능력부족
 및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Ramos 정권이 이룩해 놓은 재정수지의
 소폭 흑자기조를 대폭 적자로 반전시키는 등 경제기반을 약화시
 켰음.



<그림 Ⅱ-5> GDP 대비 정부 재정수지 추이

자료 : EIU Country Report

# 2. 경제 동향

## 가. 국내경제

### □ 경제성장세의 지속

- 2005년에는 가뭄에 따른 농산물 작황 악화 및 고유가 현상 및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04년
   6.5%에서 2005년 5.0%로 둔화되었음.
- 그러나 2006년에는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활성화, 농산 물 작황 호조, 소비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이 5.3%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sup>f</sup>
경제성장률	4.6	4.7	6.5	5.0	5.3
재 정 수 지 / G D P	-5.3	-4.6	-3.9	-2.7	-1.6
소비자 물가상승율	3.0	3.4	6.0	7.6	6.6

자료 : IFS, EIU

#### □ 재정수지의 만성적 적자 축소

- 부실한 조세제도 및 세수기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만성 적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이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이는 그 동안 재정개혁을 포함한 경제 개혁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온 아로요 정권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2006년 세출예산안의 국회통과 지연이 하반기까지 지속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 둔화는 사회인프라 개발 등에 사용될 정부지출 증가의 동결을 의미함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소비자 물가수준의 감소 전망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수송·교통비 및 전 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Cost Push와 경제규모 확대와 관련된 Demand Pull이 작용하여 2003년 2.9%로에서 2004년에는 6.0% 로 상승하였음. 2005년에도 국제유가의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오름 세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음. 또한, 고유가 현상과 2006년 2월 부가 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2% 인상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농산물 작황 호조 에 따른 식료품비 인하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은 2005년 7.6% 에서 2006년 6.6%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 개선이 경제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

- 만성적 재정적자의 해소가 경제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12월 주류 및 담배의 물품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그리고
  2005년 1월 징세 효율법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음. 또한 부가가치세
  의 세율 인상 및 면세대상 축소 조정을 위한 관련 법안도 2005년
  6월 말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 7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발효되자 야당 의원들이 관련법의 위헌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효력중지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부 가가치세법에 대해 발효 후 불과 수 시간 이내에 잠정 효력중지 조 치(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취하였음. 그러나 10월 18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위헌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효력 중지를 해제하였으며, 12% 부가가치세 제도 시행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있음.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11)

- 이외에도 국영 전력회사와 송전회사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폭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결실을
 맺고 있지는 못한 상황임.

<	(참고 >	필리핀 인프라 확충 계획
	- 아로요 대통령은	- 2006년 7월 국회 개원 연설에서 국가발전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 필리핀 인프라 확충 종합계획안을 발표함. 근래
	들어 재정수지 적	적자폭이 감소하고, 낮은 이자율이 유지되면서 경
	제성장을 촉진히	기 위한 적극적 인프라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
	임. 동 계획은 더	구섯 개의 새로이 분류된 "Mega-regions"별로
	집중 투자분야를	를 명시하였으며, 대통령은 2010년 6월 대통령
	임기 내에 사업을	을 마칠 것을 주문하였음.
	(1) North Luzon	:도로 복구, 공항 개발, San Roque 다목적댐
		확장, 소규모 관개시설 프로젝트 등
	(9) Motro I uzon	: Subic-Clark-Tarlac 고속도로와 남북 Luzon
	(Z) Metro Luzon	· Subic-Clark-Tariac 고속도도와 팀숙 Luzon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고속도로 연결사업, 통근
		고득도모들 도입이는 고득도도 한들자 b, 등는 철도서비스 연결, 철도 건설, 항만 건설 등
	(9) 즈니키어 · 코초	
		장건설 및 개선, 도로 건설 및 항만 개선 등
		로 건설 및 Lanao del Norte와 Misamis
		cidental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 등
	(5) Cyber Corrid	or : 과학 및 기술 투자 등
	– 그러나 동 사업여	이 2006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미 대문	통령의 임기 개시 때 제시된 중기필리핀발전계획
	(2004-2010)에	포함된 내용을 재포장한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는 의견도	- 있음. 사업의 성패는 충분한 재원조달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노리더십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평가됨.

## 나. 대외거래

#### □ 상품수지 적자폭 축소 예상

필리핀의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2006년 들어 해외로부터의 전자제품(총수출의 2/3 비중)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품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고유가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폭은 감소할 전망임.

#### □ 경상수지 흑자 확대 전망

 상품수지는 대체로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양호한 서비스 및 소 득수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대체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2006년에는 상품수지 적자의 소폭 축소, 관광수입 및 해외로부터 의 송금 증가 등으로 인해 2005년 25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2006년 46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억 달러):22(2004년) ⇒ 25(2005년)⇒46(2006년)

<표 Ⅱ-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sup>f</sup>
경 상 수 지	-279	2 88	1 ,6 29	2,338	4,600
경 상 수 지 / G D P	-0.4	0.4	1.9	2.4	4.0
상 품 수 지	-5,530	-5,851	-5,684	-7,546	-5,500
수 출	34,403	35,339	38,794	4 0, 23 1	45,300
수 입	39,933	41,190	44,478	47,777	50,800
외 환 보 유 고	1 3,20 1	13,523	12,980	1 5,80 0	18,090

자료 : IFS, EIU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또한 경상수지의 지속적 흑자를 통해 경상수지/GDP 비율(2.4% (2005년)⇒4.0%(2006년)) 및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 (3.29개월(2005년)⇒3.52개월(2006년)) 등의 지표가 개선 되고 있음.

#### <참고>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필리핀의 경제구조는 (1) 재정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기조, (2) 고유
 가에 대한 취약성 (3) 해외거주 노동자 송금에 대한 의존성, (4)
 수출구조의 취약성, (5)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 등 몇몇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1) 재정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기조

- 필리핀의 재정수지/GDP 비율은 2002년 -5.3%를 차지할 정도 로 다소 심각한 수준이었음. 이는 세수기반 부족과 각종 조세징 수 체제의 미비 등에 주로 기인함. 2002년 이후 아로요 정권의 지속적인 재정수지 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비록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정수지 적자기조는 완화되어 왔으며, 2006년에는 재정수지/GDP 비율이 -1.6%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2006년 세출예산안이 하반기까지 의회를 통과하 지 못함으로써 재정수지 적자폭은 대폭 감소하였지만,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부담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005년 7월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당초 예정 되었던 부가가치세 확대 실시가 지연되자 정치적 불안정성을 이 유로 필리핀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는 S&P 는, 그러나 2006년 2월 당초 계획대로 부가가치세 도입이 확대

되는 등 필리핀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이 가시화되면 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필리핀의 향후 등급 전망을 '안정 적'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 (2) 고유가에 대한취약성

국제적인 고유가는 필리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급등(2004
년: 6.0%, 2005년: 7.7%, 2006년: 6.6%)과 경제성장률 저하(2004년: 6.5%, 2005년: 5.0%, 2006년: 5.3%)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3) 해외거주 노동자 송금에 대한 의존성

 - 필리핀 경상수지의 흑자는 상품수지 적자를 해외거주 노동자의 송금이 보전하고 있는 상태임. 2005년까지 매년 송금액이 큰 폭 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 증가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 며, 근본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송금에 국가경제가 과도하게 의존 함으로써 필리핀 경제구조의 안정성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4) 수출구조의 취약성

 총 상품수출(402억 달러)에서 전자제품 수출(273억 달러)이 차 지하는 비중이 68%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품목 다변화는 부족한 상황임. 또한 총 수출의 약 35%(2005년 기준)가 미국과 일본 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구조가 취약한 것으 로 분석됨.

#### (5) 과중한 외채상환부담

- 2005년을 기준으로 경제규모(GDP) 및 총 수출에 대한 총외채
 의 비중이 각각 62%와 124%를 기록할 정도로 외채상환 부담이
 다소 과중한 편임.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않으나 최근들어 DSR 및 단기 외채 비중이 개선되거나 안정회					
되는 추세에 있어 단기에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표 Ⅱ-3>		대외채무규	구모 변화 <i>추</i>	트세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50040	58,000	60,600	60,700	62,000
총 외 채 잔 액	59,342	30,000	00,000	,	,
총 외 채 잔 액 총외채잔액/GDP	59,342 77.3	72.8	69.9	61.7	
					54.2 90

##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저조

필리핀의 주요 투자국가들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대만 등으로 1994년 외국인투자규모가 미화 약 25억 달러에 달한 적이 있음. 그 러나 최근 필리핀의 정국불안, 재정위기발생 우려, 중국과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줄어든 상 태임.

<표 Ⅱ -4> 최근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 00 6 <sup>f</sup>
금 액 1,500 500 700 1,100	1,800
대 G D P 비 중 2.0 0.6 0.8 1.2	1.6

자료 : EU viewswire

<표 Ⅱ-5> 최근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승인액 추이

단위:	백만 폐소
-----	-------

구 분	2005 2/4	2005 3/4	2005 4/4	2006 1/4	Total
한 국	172	769	3 12	5 1,68 1	52,394
미 국	1,759	6,303	4,676	6,380	19,118
네 덜 란 드	4,030	502	11,617	259	16,407
일 본	3,066	6,234	4,035	2,862	16,198
케 이 만 군 도	-	-	13,817	-	13,817
버 진 아 일 랜 드	60	-	2,1 49	40	2,249
싱 가 포 르	88	152	623	1,371	2,233
태 국	1,534	-	-	-	1,534
기 타	1,038	2,244	8 78	895	3,299
Total	1 1,74 7	16,203	36,351	63,487	1 27,7 88

자료 : 필리핀 투자위원회 (BOI)

- 2000/02년의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규모가 미화 약 13억 달러였으 나 2003/04년에는 연평균 6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음. 필리핀 법 제도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장수준이나 이 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는 외국인투자자의 필리핀에 대한 신뢰상실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함.
- 최근 외국인 투자 유입의 증가는 주로 외국계 기업간 또는 외국계 기업과 자회사간의 자금 이동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2006년 1/4분기 중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HHIC-Phil Inc.) 은 필리핀 수빅 경제자유구역청(SBMA)과 조선소 건립을 위한 10 억불 상당의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42

#### <참 고> 필리핀 투자 일본기업 대상 투자환경 설문조사 결과

- 2003년 JETRO가 필리핀 투자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환경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주된 애로사항은 빈약한 사회간접자본,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환경, 원자재 조달의 애로, 임금상승 등으로 나타남.
- 일본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에 대한 분야별 비율 (응답업체 중 해당 항목을 지적한 업체의 비율):
  - 불충분한 사회간 접자본 : 77%
  - 불안정한 정치 · 사회적 환경 : 72%
  - •지방정부의 불분명한 정책 운영 : 50%
  - 낮은 노동력 수준과 불충분한 교육 : 61.7%
  - 임금상승 : 59.7% ※기타 노동문제로는 해고 및 인원감축 제한, 파업 등 강한 노조 활동
  - 불안정한 현지화 환율: 58.2%
  - 필리핀내 원자재 획득의 애로 : 60.5%
  - ※ 원자재의 절반 이상을 필리핀에서 조달하는 일본기업은 전체의 17.4%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품질관리 애로 : 43.5%
- 상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기업은 없었으며 일부는 생산시설 확장을 고려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일본기업의 필리핀 투자에 결정적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기업의 필리핀 직접투자진출은 주로 전자, 프라스틱, 자동차, 금속산업 등의 분야이며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수는 150개 업체임)

##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 능력

#### □ 주요 신용도평가기관의 신용도 추이

- OECD : 5등급(05. 4) → 5등급(06. 4)
- ICRG : 87/140(05. 9)  $\rightarrow$  87/140(06. 8)
- Euromoney :  $80/185(06.3) \rightarrow 81/185(06.9)$
- $-\text{I.I}: 76/173(06.3) \rightarrow 75/173(06.9)$
- Moody's: B1(Stable, 05.2) → B1(Negative, 05.7) → B1(Stable, 06.11)
- S&P : BB−(Stable, 05.1)  $\rightarrow$  BB−(Negative, 05.7)  $\rightarrow$  BB−(Stable, 06.2)
- FITCH : BB(Stable, 05.5) → BB(Negative, 05.7) → BB(Stable, 06.2)

#### □ S&P, Moody s' 등의 국가신용도 회복

- 국제신용도평가기관들은 필리핀 정부가 재정부족의 일부를 해외차
   입으로 해결하면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
   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국가신용등급을 2005년 하향 조정하였음.
- S&P는 필리핀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2005년 1월 BB에서 BB 로 낮추었으며, 2005년 7월에는 Arroyo 대통령의 대선부정 관련
   탄핵 위기 등으로 정국이 불안해지자 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
   로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 s도 2005년 2월 Ba2에서 B1로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렸
   으나 추가 등급조정은 없었음. 그리고 Fitch는 국가신용등급을 BB
   로 계속 유지하되 전망은 2005년 5월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
   조정하였다가 7월에 다시 Negative로 재조정하였음.

 그러나 최근 필리핀의 재정수지 적자폭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국제수지 경제지표 등이 양호해 짐에 따라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있음.

###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전액 인수 가능

## 3. 정치·사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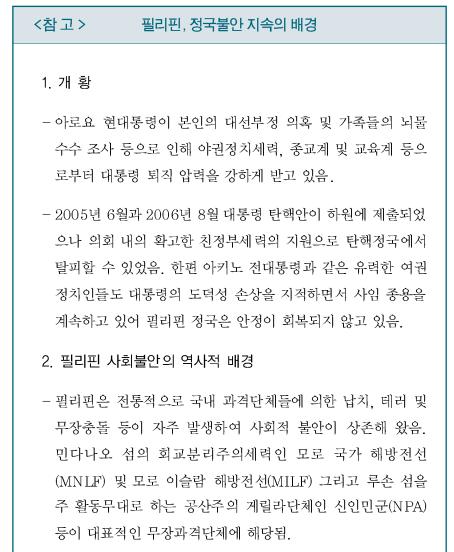
## 가. 정치 안정성

#### □ Arroyo 대통령의 탄핵정국 극복

- 2005년말까지 아로요 대통령은 두번의 쿠데타 시도와 1번의 탄핵 시도를 넘기면서 정권을 유지해오고 있음. Arroyo 대통령은 대선 부정 의혹 및 가족들의 뇌물수수 조사 등으로 인해 야권정치세력, 종교계 및 교육계 등으로부터 대통령 퇴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 며, 2005년 6월말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으나 의회 내의 확고한 친정부 세력의 지원으로 부결되었음.
- 특히, 2006년 2월에는 지난 1986년 2월 부패한 마르코스 대통령을 퇴진시킨 이른바 '제 1차 피플파워'의 20주년을 맞아 반 아로요 시위가 예상되자 군부 쿠데타 위험 등을 이유로 전격적으로 국가 비 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요 야당 지도자 100여명을 체포하는 등 반대

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나, 필리핀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력 을 지닌 카톨릭계도 자제를 촉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로는 발전하지 않았음.

- 2006년에도 야당에서는 선거부정을 이유로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도가 있었으나, 친정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하원내 정부지 지 의석수가 2/3을 넘어 탄핵안이 부결되었음. 아로요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2007년 5월 실 시예정인 하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여 재차 탄핵안 처리를 시도 하는 것이나,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아로요 대통령은 이러한 정정불안을 타개하고자 대통령 중심제,
   양원제인 통치기구를 의원내각제, 단원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추진
   중이나, 대통령의 조기퇴진과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음.
- 대법원은 최근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면 서 개헌이 상·하원 표결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아로요 대통령 이 추진 중인 개헌을 통한 정국타개가 한층 힘들어질 전망임. 한편, 대통령은 군부세력에 정권유지의 상당부분을 의존함으로써 군부와 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쿠데타를 통한 정권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0%를 밑돌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탄핵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로요 대통령은 의회 내에 비교적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어 가까 운 시일 내에 정권이 붕괴되거나 정정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모로(Moro): 필리핀 남쪽 섬에서 전통적으로 거주하는 회교도들을 지칭

최근에는 남쪽 바실란 섬을 주근거지로 아부 사야프가 이끄
 는 과격회교단체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있음. 이들은 독립회교국 건립 투쟁을 표방하고 있으나 관광객 또는 주민을 납치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음.

- 한편 민다나오 섬의 분쟁은 그 시발이 16세기 스페인의 필리
   핀 지배가 시작되면서 토착회교도에 대한 천주교로의 개종
   과정에 연유된 것으로 알려져 약 500년의 역사가 있음. 특히
   1950~60년대에 루손 및 비사야스 지역으로부터 기독교 계
   통의 주민들이 민다나오 섬으로 대거 이주하자 회교분리세력
   들의 활동은 더욱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 \* 비사야스 지역: 루손 및 민다나오 섬 사이에 있는 사마르, 파나이, 네그로스, 체부, 레이테 등의 섬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지명
- 민다나오 섬의 회교분리세력과 Jemaah Islamiyah(JI)의
   연계 가능성 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아부 사야
   프는 자신의 조직원을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운영한 바 있는 알 카에다 훈련소에 파견 훈련시킨 적이 있다
   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 JI: 198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공동체 형식으로 출범, 동남아 지역에 근본주의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al Qaeda 조직과 연관을 맺 으면서 테러 활동 전개
- 1969년에 발족한 NPA는 1950년대 중반 루손 섬에서 발생한
   후크발라합 봉기의 근본 이념을 계승하여 농촌지역으로 침투,
   세력 확대를 지속한 결과, 1985년 정규군이 25,000명에 달하

였으며 전국 농촌의 약 20%가 NPA의 영향권 하에 있었음.

- 1992년 공산당도 합법정당으로 인정되자 NPA는 국가민주화 전선(NDF)을 산하 정당으로 설립하였으며 현재 좌익 정치세 력으로 하원에도 진출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지속적인 유화 정책 추진 등이 주효하여 NPA 정규군의 수는 10,000 여명 으로 감소하였음.
- 1986년 마르코스의 하야 이후 지난 19년 동안 10여 차례의 군부 쿠데타 시도가 있었음. 2003년 7월에는 특수부대 (Scout Rangers) 장교 및 장병 323명이 마닐라 시내 고급아 파트 단지의 고층 1개 동을 급습, 23시간 동안 점거하여 군부 내 부패일소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현재 필리핀 군인들은 군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의료시설 및
   병영막사의 불충분, 군부 고위층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쿠데타 시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 또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높은 실업률, 빈곤층의 불만 등으로 인해 대정부 항의시위가 빈발하고 있으며, 정치적 문제로 인 한 군중시위도 자주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리핀 국민 들은 시위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보임. 1986년 2월 마 르코스, 2001년 1월 에스트라다의 권좌로부터 축출도 민중의 힘(People Power)이 주도하였음.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3.최근 정국불안 심화의 근인

#### □ 대통령의 대선부정 관련 부적절한 통화내용에 대한 시인

- 아로요 대통령은 2001년 1월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이 권좌에 서 물러났을 때 부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며 전 임 대통령의 잔여임기만 채우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의 불출 마를 약속하였음. 그러나 2003년 11월 영화배우 출신으로 에 스트라다 전대통령의 친구인 페르난도 포우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자 아로요 대통령은 불출마 약속을 깨고 대선 입후보 를 선언하였음.
- 2004년 5월 대선에서 아로요 대통령이 포우와의 접전 끝에 약 1백만 표 차이로 승리하여 집권 2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그러나 포우는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 관 련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음.
- 2004년 12월 포우의 사망으로 대법원 소송은 중단되었지만 그의 지지자들의 선거부정 규명 투쟁은 계속되었으며 2005 년 5월 2004년 대선기간 중 아로요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 장의 선거부정 관련 부적절한 통화 내용을 도청 녹음한 것을 입수, 발표함, 그 이후 필리핀 의회에서는 녹취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마침내 6월 27일 아로요 대 통령은 본인이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임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함.

#### □ 가족들에 대한 뇌물수수 조사

- 아로요 대통령의 남편은 고위직에 대한 인사 청탁과 불법
   복권게임 운영자들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의회 특별위원회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하원 의원인 아로요 대통령의 아들과 시동생도 불법 복권계
  임 운영자들로부터 각각 매월 50만 페소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도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또한 아로요 대통령 본인도 2004년 5월 대선
  당시 불법 복권게임 운영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수수하였다
  는 의혹을 받고 있음.

#### □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반작용

#### ◁ 조세제도의 개혁 ▷

- 필리핀 정부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성 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10월 세제 관련 법제 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재정안 정화 계획에 의하면 주류 및 담배 물품세율의 인상, 징세 효 율성 제고, 연체세금의 탕감, 투자 인센티브의 합리화, 부가 가치세의 세율 인상 및 면세대상 축소, 소득세 산출체계의 조정, 통신독점망세의 도입 등 8개 조세관련법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임.
- 8개 조세관련법 중에서 주류 및 담배의 물품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2004년 12월, 그리고 징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안
   은 2005년 1월 의회에서 가결되었음.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법안 및 면세대상 축소 법안도 2005년 6월 의회에서 통과되 었음. 그러나 연체세금 탕감 법안 및 투자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은 2004년 12월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아직도 상원에서 계류되어 있음.

- \* 일곱 번째의 소득세 산출체계의 조정과 여덟 번째 통신독 점망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측에서 하원에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 2005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발효되자 야당 의원들이 관 련법의 위헌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효력중지 청원을 제출하 였으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발효 후 불과 수 시간 이내에 잠정 효력중지 조치(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취하였음. 2005년 10월 18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법이 위헌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효력중지를 해제함.
-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관련업계 및 일반소비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율 인상 및 면세대상 축소로 인해 유류 및 가스, 전기, 국내 항공 및 해운, 의료 및 법률 서비스, 비식용 농산품, 문예 창작 등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가격이 인상되어 2005년과 2006년 기간 중 큰 폭으로 물가가 상승함.

◁ 정치체제의 개혁 ▷

 - 아로요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현 대통령중심의 중앙집 권제를 내각책임의 연방제로 변경하는 정치체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제도의 개혁 등 경제 관련 사항이 시급하여 헌법 개정작업의 추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 - 입법절차의 쇄신, 관료적 형식주의 탈피, 선거비용이 필요치
 않은 선거제 도입, 기존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 대한 재정
 비 등도 이번 헌법 개정 작업에 포함됨.

 - 연방제 도입은 회교분리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민다나오 섬 등 남부지방의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해 기득권층에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 하고 있음.

#### 4. 정국불안의 근본적 원인

- 이와 같이 정정 불안의 상기 적시한 내용에 기인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1)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경제 : 독재와 정부의 무능력 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40년째 '1인당 GDP 1,000 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 인구의 40%가 1일 1달러로 연명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2) 아로요 정권의 실정 : 새로 출범한 아로요 정권도 별반 다 르지 않았음. 2005년 현재 총 외채가 GDP의 60%에 육박 하고 있으며, 정권 출범 당시 약속한 일자리 800만개 창 출, 외자유치, 민영화를 통한 재정개혁 등 주요 공약은 실 현되지 않고 있음.
  - (3) 유력 가문 간의 세력다툼 : 필리핀은 '마르코스', '아키 노' 등 약 150여개의 유력 가문이 중앙 및 지방 권력을 분 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플파워'도 냉정한 의미에서는 유력 가문 간 세력다툼임.

## 나. 사회 안정성

#### □ 민다나오 섬 회교분리주의 세력과의 협상 추진

- 민다나오섬의 가장 큰 회교 분리주의 세력인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MILF)과 정부는 평화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MILF는 500만 회교인들을 위하여 광물이 풍부한 민다나오섬에 자치권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민다나오섬 내 가톨릭 교도와 지 주 등은 평화협상에 반대하고 있음.
- 이미 민다나오 섬의 일부지역 즉, Sulu 주를 포함한 5개 주와 Marawi 시 등 6개 지역에서는 1996년 9월 체결된 평화협정에 의거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음. (루손 섬 북부 코딜레라지역에 대해서도 역사 및 문화의 특유성을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하였음.)
- 2006년 9월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협상에서도 큰 성과가 나타나
   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회교세력 모두 평화를 원하
   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됨.
- 이러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모로 국가 해방전선(MNLF)
   등 민다나오 섬의 회교분리주의세력들과 정부군간의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강도는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루손 섬
   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게릴라단체인 신인민군(NPA)의 활동도 지 속되고 있음.
- 한편 미국에서는 회교반군진압과 관련하여 군비를 포함한 군사지
   원을 계속하고 있음. 그리고 회교반군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마
   닐라 등과 같은 경제중심지가 아닌 남부 섬지방임.



<참고>	민다나오 문제
🗆 역사적 배경	
하고 있었으나, 미 릭교도들을 적극	D년전까지만 해도 이슬람교도가 다수 거주  국 식민당국과 독립 후 필리핀정부가 가톨 적으로 이주시킨 결과 현재 이슬람교도는 구의 25% 수준(약 500만명)임.
가 모로민족해방 MNLF)을 결성하	핀 대학교 정치학 강사 출신의 Nur Misuari 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 고 민다나오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대정부 년 동안 10만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협정을 체결, 이슬 가 됨)와 9개시를	중재로 필리핀정부와 MNLF는 Tripoli '람교도지역 13개주(추후 1개가 늘어 14개주 를 민다나오 이슬람자치지역(Autonomous m Mindanao; ARMM)으로 지정키로 합의
Tawi, Lanao de	결과 4개주(Sulu, Maguindanao, Tawi- l Sur)만 ARMM에 포함되었으며, 2001년 대주민투표 결과 Marawi시와 Basilan주가
□ 평화협정체결	
	이슬람회의기구(OIC) 및 인도네시아 등의 3년 10월 이후 MNLF와 3차례의 공식회의 H원회를 개최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1996년 6월 23일 양측은 평화협정안에 합의하고 1996년
9월 2일 Manila에서 정식서명 하였음.

### □ 평화협정 주요 내용

- ⑨ 평화-개발특별구역(Special Zone of Peace and Development: ZOPAD) 지정
- 1976년 Tripoli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민다나오 이슬람지역 14개주와 9개시를 ZOPAD 지역으로 선포

※ 민다나오이슬람지역

	14개 주	Maguindanao, Sula, Tawi-Tawi, Lanao del Sur, Lanao del Norte, Zamboanga del Sur, Zamboanga del Norte, South Cotabato, North Cotabato, Davao del Sur, Sultan Kudarat, Basilan, Sarangani, Palawan
	9개 시	Zamboanga, Pagadian, Dipolog, Dapitan, Marawi, Iligan, Cotabato, General Santos, Puerto Princesa

- ② 남부필리핀평화-개발위원회(Southern Philippines
   Council for Peace and Development) 설치
- ZOPAD의 평화와 개발관장(3년간의 한시기구)
- 의장(Chairman), 부의장(Vice Chairman), 기독교대표, 회교대표및 Lumad족대표의 5인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③자문의회(Consultative Assembly) 구성

- ZOPAD지역의 주지사, 시장 등의 대표 총 81명으로 구성(이 중 44명은 MNLF가 추천) ④ MNLF 요원의 군경편입

⑤ Special Regional Security Force 설치

- ZOPAD 지역의 치안담당

#### □ 민다나오이슬람자치지역(ARMM) 정부출범

- 1996 평화협정에 따라 Nur Misuari가 ARMM 주지사에 취임하였나, 공금횡령 및 유용, 호화생활 등으로 Misuari에 대한 비난 고조
- 2001년 11월 실시된 ARMM 주지사선거에서 친정부인사인 Parouk Hussin이주지사에 당선
- Nur Misuari는 선거전후에 발생한 정부군과 반군간의 유혈
   충돌을 모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되어 송환
- ARMM자치정부가 2002년 1월 출범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Nur Misuari 전 주
   지사 추종세력의 반발 가능성 상존

### □ 주요현안

- 필리핀정부는 MNLF에서 분리된 필리핀 최대의 이슬람 반군
 단체 인 모로 이슬람 해 방전선(MILF : Moro Islam
 Liberation Front)과 2001년 6월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05년 9월, 2006년 9월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개최된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평가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그러나, Abu Sayyaf 반군 등 과격 이슬람단체들은 인도네시
 아의 Jemaah Islamiyah 같은 국제테러단체와 연계되어 테러
 러에 필요한 훈련, 자원 등을 공급받고 필리핀내에서 테러공
 격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슬람반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민다나오지역의 사회-경제개발 역시 용이치 않아 민다나오 지역의 평화-질서회복은 요원한 상태임.

#### □ Abu Sayyaf의 과격 회교단체에 의한 테러행위

- 2003년부터 남쪽 바실란 섬을 주근거지로 하여 Abu Sayyaf가 이 끌고 있는 소규모 과격회교단체의 활동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
   이들은 독립회교국 건립 투쟁을 표방하고 있으나 관광객 또는 주민 을 납치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주로 저지르고 있음.
- 특히 2005년 2월 14일 이 과격단체는 필리핀 정부의 남부 회교반
   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마닐라 기차역 인근 고속도로, 남부 제너
   럴 산토스시의 쇼핑몰, 남부 다바오의 버스터미널 등 3개 지역에
   폭탄 테러를 자행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필리핀 정부는 Abu Sayyaf가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으며, 조로섬
   이 알카에다 무장세력의 훈련기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소탕을 위해 다양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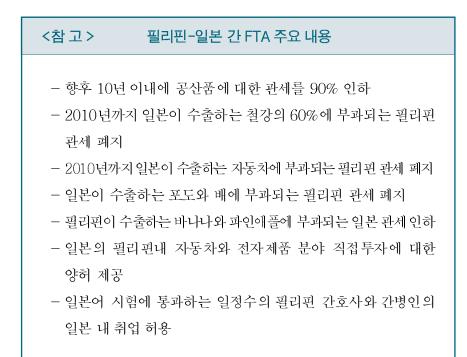
## 다. 대외 관계

#### □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필리핀 안보의 기축

- 1992년 11월 미군이 필리핀에서 완전 철수하였지만 미국과의 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1999년 미·필리핀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여 미국의 원격 안보지원 및 합동군사훈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Arroyo 대통령의 2000년 11월 방미시 46억 달러의 군비지원이 약
   속되었으며, 2003년 12월 Bush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간의 군사·안보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었음.

#### □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제1위의 ODA 지원국

- 일본의 대필리핀 ODA 지원규모는 필리핀의 총 ODA 수원액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이며, 이는 2차 대전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2004년 2월 1차 협상이 시작되었던 일본과의 FTA 협상이 2006년
   9월 11일 타결됨. 필리핀은 일본에 대해 WTO 기준에 따라 실질적
   이고 전반적인 관세철폐를 요구하였으며, 양국의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여 먼저 일본의 농수산품 시장개방을 원한 바 있음.



- 한편 필리핀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잠재적으로 경계하지만, 기본
 적으로 미·일 안보동맹 범위 내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는 찬성하는 입장임.

### □ 중국과는 베트남 공산화 직후 관계 정상화

 - 필리핀은 사회주의제국과의 선린정책에 따라 중국과는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졌음. 남사 군도(Spratly Islands) 문제가 간헐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으나 중국 과의 양자차원보다는 ASEAN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한 해결을 회망

#### □ 여타 인접국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ASEAN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여타 회원국들과의 관계강화에 외교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더욱이 말레시아와 브루나이는 필리핀의
 민다나오섬에 군대를 파견하여 회교분리주의세력과 필리핀군
 (AFP)간의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등 필리핀 남부지역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 라. 지역경제협력기구

####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 ASEAN은 1967년 8월 '방콕선언'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 함께 설립 회원국임.
   현재 ASEAN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총회원국 수는 10개 국임.
- ASEAN의 설립목적은 역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을 위한 협력,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를 통한 역내 정치 · 경제적 안정 유지,
   역내 국가간 상호 갈등 해소 등임.
- 매 3년 마다 공식 ASEAN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공식 회의 사이에 매년 비공식 회의가 열림. 1998년 제6차 공식 정상회의에서 공식, 비공식을 불문하고 모두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형태로 개최키로 결정.

####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1989년 12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 태평양지역 12개국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하였으며, 현재
   회원국 수는 21개 국이고 필리핀은 최초 설립회원국으로 참여함.
- APEC의 설립목적은 회원국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
   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임.
-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 (Forum)' 형태
   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역내 최고의 정책공조 포럼이자 지역경제협력의 '場'이 되고 있음.

#### <참고> 남사군도 영유권문제의 배경 및 필리핀의 입장

#### □ 영유권문제 발생 배경

- 남사군도(Spratly Islands)는 남지나해 보르네오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44개 도서와 400여개 산호초로 구성되어 총해역이 22만 km<sup>2</sup>에 달함.
- 1960년대 후반 유엔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남사 군도에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 표하자 인접국들의 영유권 분쟁이 촉발됨. 이 군도와의 지리 적 위치는 필리핀이 가장 인접해 있으나, 중국, 베트남, 필리 핀,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 고 있음.

- 중국과 베트남은 1974년 1월 및 1988년 3월 두 차례의 무력

충돌을 벌였으며, 영유권 주장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자국 군 대를 남사군도에 파견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항해 하는 분쟁 당사국의 어선을 나포하기도 하였음.

- 따라서 ASEAN은 1998년 하노이 행동계획 등 수차례의
 비구속적 선언을 통해 남사군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

#### □ 필리핀 · 중국간의 분쟁

- 1994년 말 중국이 Mischief Reef(산호도)에 어민 대피소 명목으로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양국간의 분쟁이 표면화되 었으며, 1995년 8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분쟁해역의 평 화·건설적 사용에 합의하는 공동성명 채택으로 일단락됨.
- 그러나 1998년 10월 중국이 Mischief Reef에 군대를 파견, 시설물을 증축함으로써 양국간의 분쟁은 재연되었으며, 양자
   및 다자간 외교노력에도 불구하고 돌파구 마련에 실패. 필리
   핀은 중국과의 양자차원의 해결에는 부담을 느끼고 ASEAN
   등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적 접근에 더 비중을 둠.

#### □ 영유권 주장 관련 필리핀의 입장

- 남사군도가 필리핀의 200 해리 경제수역내에 포함되는 것이 필리핀 영유권 주장의 주된 근거이며, 필리핀은 남사군도의 Pagasa섬 등 8개 도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분쟁해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군력의 한계로 Pagasa 섬 등에 대한 60~70명의 군대 파견은 상징적 조치로 간주됨.
- 한편 2002년 11월 캄보디아 ASEAN 정상회담에서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채택키로 함으로써 다자적 접근에 의한 문제해 결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 1. 산업구조

### □ 서비스 산업 비중의 증가세 지속

 - 필리핀의 산업구조는 2005년 기준으로 농림어업부문이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3%, 제조업을 포함한 공업부문 32.2%, 서비스산업부문 53.4%로 나타남.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감소세 를 보이고 공업부문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서비스산업부문의 비 중은 중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Ⅲ-1>

#### 신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농	림	어	업	15.1	15.1	13.0	13.7	14.3
공	업 (제	조	업 )	3 1.6 <b>(</b> 22.9)	31.8 (23.1)	32.6 (23.8)	32.4 (23.5)	32.2 (23.3)
서	비	스	업	53.2	53.1	54.4	53.9	53.4

자료 : IFS, EIU

> 농립어업부문은 GDP 비중에서 공업부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부문별 고용구조에서는 공업부문을
 앞서고 있음. 이는 필리핀의 농림어업부문은 생산 및 고용에서 아직

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반중함.

한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으며, 단기에 이익창출이 가능하여 화교 및 화교계 필리핀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영업실적에서도 국영기업과 외국인투
 자기업을 제외하면 화교 및 화교계 필리핀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항
 공회사, 은행, 백화점 및 유통업체들이 상위를 차지함.

# 2. 농림어업

### □ 쌀과 코코넛이 주요 농산품

 - 필리핀 수출이 한때 모두 농산품으로 이뤄질 정도로 농업부문이 경 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 기준으로 농산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지나지 않음.

<표 Ⅲ-2> 주요 농산품의 수출 비중(2004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금 액	비 중	
코	코 넛 기 름			름	578	1.5	
건	번조 코코넛			넛	100	0.3	
0‡	자		과	육	31	0.1	
바	바나			나	32.4	0.8	
파	인 애		플	176	0.4		
망	망		고	31	0.1		
기	기 타		325	0.8			
	계				1,565	4.0	

자료: EIU Country Profile

- 필리핀 농업부문의 전통적 주산품은 쌀과 코코넛으로 쌀은 주로 국내수요를 위해 생산하는 정도이지만 코코넛 수확량은 전세계 산 출량의 절반에 달함. 쌀농사는 주로 루손 섬에서 이뤄지며 총경작면 적은 약 400만 ha이고, 코코넛은 민다나오 섬에서 절반이 재배되고 있으며 총재배면적은 약 320만 ha로 집계됨.
- 1998년 엘니뇨 한발로 인해 쌀 수확량이 전년대비 24%, 코코넛 수확
  량은 6.6% 감소하여 각각 860만 톤, 1,280만 톤을 기록하였음. 그러
  나 그 이후 주요 농산품의 산출량은 점차 증가하여 2004년 기준 쌀과
  코코넛의 수확량이 각각 1,450만 톤, 1,440만 톤으로 증대

#### <참고 > 농업분야 성장의 걸림돌 - 농지개혁 실패

#### □ 토지분배 실패

- 여타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의
   경제성장은 토지 재분배의 실패에 기인함.
- 인구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작지 확보로 인해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2년 국가통계청 (National Statistics Office)의 조사에 따르면 1가구당 평균 면적도 2.04 ha에 불과하고, 소수의 지주가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여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농촌지역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음.

## □ 농지개혁법(CARP: 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Program)

- 1986년 민중혁명으로 아키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87년부
  터 시행된 농지개혁법은 농가 1가구당 농지소유한도를
  5ha(상속자당 3ha)로 제한하였음. 수혜계층은 농민과 농장
  노동자였고, 당시 농지의 55% 가량이 동 법의 적용을 받았으
  나, 이로 인해 단위 경작규모가 소규모화 되고 농가의 자금여
  력이 부족하여 농업산업이 후퇴하게 됨.
- 한편, 동법은 광범위한 예외조치를 허용하였는데, 기업이
   토지를 소유할 경우 토지 이전이 아닌 주식 이전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대규모 농장 지주는 기업설립을 통해 토지를 분할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었음.
- 농지개혁법 시행시한이 당초 1998년이었으나 정부재원 부족
   으로 자금이 없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였고, 2008년까지
   10년간 시한을 연장하였음. 2004년 상반기 현재 분배대상
   토지 429만ha 가운데 80%인 372만ha 면적의 토지가 195만
   농민들에게 분배되어 있음.
- 정부 재정적자로 이해 2008년까지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까지로 다시 시한 연장을 추진 중임.

### □ 한계산업에 속하는 임업부문

- 임산물의 생산량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67

1990년대 초반 대GDP 비중이 약 0.5%로 나타났으며, 2004년 기 준의 임산물 수출액은 미화 3,390만 달러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미미함. 한편 아직도 민다나오 섬 등의 오지에서는 불법 벌목 이 대단위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어업부문의 경제기여 도 증가 추세

- 어업부문의 종사자가 1,400만명(2003년 10월 기준)에 이를 정도
   로 이 부문의 사회기여도는 매우 중요함. 외화획득원으로서도 어업
   부문의 중요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최근 상업적 어로활동 및 양식어업 등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근해 어장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 특히 근해에서 다이나 마이트 등을 이용한 어로행위는 산호초 파괴로 인해 어로자원 고갈 을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으며, 외국선단의 필리핀 어장 잠식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

## 3. 광업

#### □ 주요 광물자원은 금 및 동

필리핀의 주요 생산광물은 금 및 동 등이 해당되고, 여타 광물로는
은, 니켈, 크롬 등이 있음. 최근 광물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5년 기준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를 기록함. 그리고 2003년 기준 금 생산량은 37,844kg, 동정광 생산량은 20,414
톤으로 나타남.

### □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기대

2004년 12월 필리핀 대법원이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위 헌'이라는 종래의 판정을 취소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문에 대 한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1995년 위헌판 정으로 인해 40여개 외국인투자 광업프로젝트의 추진이 중단되었 으며, 위헌판정 취소 결정 이후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청 건수가 28건에 이름.

#### □ 호주 Climax Mining의 디디피오 금·동광프로젝트 개요

- 호주 Climax Mining이 추진하고 있는 루손 섬 디디피오 금·동광프
   로젝트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07년에는 상업적 생산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됨.
- 디디피오 금·동광프로젝트의 총투자금액은 1억 1,5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생산규모는 금의 경우 연산 9만 4,000 온즈, 동정광 1만
   톤으로 추정함. 앞으로 15년 동안 예정 생산규모로 금 및 동정광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4. 제 조 업

#### 🗌 제조업 개황

 제조업은 2005년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를 기록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임. 1950~60 년대에는 주로 수입대체품을 생산하여 국내산업을 육성 보호할 수 있었음. 특히 소비재품의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산업이 크게 발전되었음.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11)

- 1980년대 초반부터 중공업분문의 개발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제련소, 화학단지,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등의 건 설이 정부주도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제조업의 구조는 소비재 생산 치중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였음.
- 1970년대부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전자 및 자동차부품산업 등의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시장 수요 충족에 초점 이 맞춰진 육성지원정책이 실시되었음.

<표 Ⅲ-3> 주요 제조 품목별 생산 비중(2004년 기준)

단위 : %

	전년대비 증가율	비 중
식 료 품	8.8	47.4
전 기 ·전 자 장 비	13.6	12.0
화 학 제 품	7.2	6.6
의 류 및 신 발 류	7.4	1.5
전체 제조품목	5.1	10 0.0

자료: EIU Country Profile

#### □ 가전산업 위축

- 필리핀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은 수출 목적 보다는 내수 지향적이며,
   따라서 판매량의 대부분이 내수용임. 현지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
   지고 수입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져 채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점차 동남아 현지법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비율이 증가
   하고 있음.
- 특히 아세안 통합에 따라 대 아세안 수입관세율이 현재 대부분 무관 세 내지는 5%까지 낮아져 필리핀 현지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며 LG 전자도 생산공장을 운영하다고 판매법인으로 전환한 바 있음.

#### □ 수출가공 특별경제 지대(EPZs)

- 1995년 특별경제지대법(법률 제7916호)의 제정으로 필리핀 특별 경제지대청이 설립되면서 바탄의 마리벨레스에 처음으로 수출가공 특별경제지대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150개의 수출가공구 및 산업 단지 등이 전국에 걸쳐 설치 운영되고 있음.
- 특별경제지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자본 양도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음. 세제상의 혜택으로 는 국세, 지방세가 면제되고 5%의 특별세만 납부하는 등 여타 기업 들보다 많은 추가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참고 > 특혜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Clark 특별경제지대

- 필리핀 대법원은 2005년 4월 Clark 특별경제지대는 세제상
   의 특혜를 누릴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함. 전미군기지에서 특별
   경제지대로 전환된 경우 Subic 특별경제지대에만 세제상 특
   혜제공이 가능함.
- 1992년의 기지전환개발법은 특혜제공에 관해서 단지 Subic
   기지만 언급하고 있어 여타 기지들은 해당이 될 수 없다고 대
   법원은 해석함. 관련법의 개정 또는 투자 인센티브 합리화법
   에 특별조항 반영 등을 통해서 조처하지 않는 한 Clark 특별
   경제지대에 대한 특혜제공은 불가능해 보임.
- 이처럼 필리핀 법제도의 일관성 없는 시행이 외국인투자자들
   의 불신을 증가시켜 외국인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음.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11)

- 2005년 기준으로 전국 특별경제지대의 기업에 취업한 총인원수는
   약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년 중 전국 특별경제지대의 총수출규모가 32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한편 필리핀 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특별경제지대에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축소 등을 포함하는 투자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 중국의 저가경쟁에 고전

- 필리핀은 ASEAN 역내국들에 의한 국가간 생산설비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및 대만의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장기적으로 수출제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것으로 봄. 그러나 현재 필리핀의 대외수출경쟁력이 중국의 막강한 저가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제조업의 고용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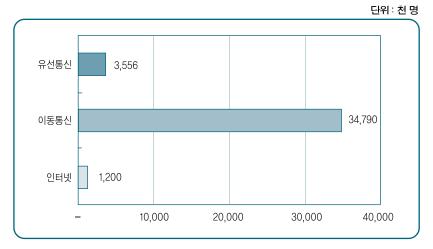
- 종업원이 20인 이상인 기업체가 1999년 기준으로 7,451개이고 총
   고용인원은 110만 명이며, 종업원이 20인 이하인 기업체는 11만
   7,000개로 총고용인원은 45만 6,000 명으로 나타남.
-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충분치 못
   하여 고용기여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형편이나, 이들 소규모
   기업이 고용기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5. 정보통신업

### □개 황

 최근 통신기반시설의 비약적 발전 및 보급을 통하여 필리핀 국민들 의 유·무선 통신,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향상됨. 2005년 말 현재 무선통신 가입자는 3,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터넷 보 급 확산으로 지식공유 및 전파가 촉진되어 지역간 정보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그림 Ⅲ-1> 필리핀 유선, 무선, 인터넷 가입자 현황(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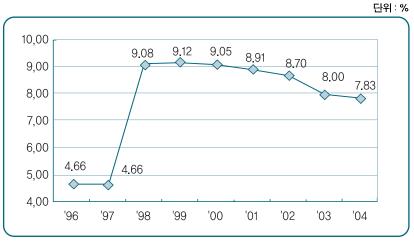
### □ 유선통신 보급은 정체

 현재 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mpany(PLDT)가 지 배적 사업자로서 유선통신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Globe Telecom 외 70여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유선전 화 보급률은 9.12%에 다다른 199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보급률은 7.83%에 불과한 실정임.

단위 : 천명 2500 2,044 BAYANTEL BELL TELECOM 2000 DIGTEL ETPL/TTPI 1500 INNOVE PHILCOM 1000 PILTEL 450 411 263 PLDT 195 500 PT&T 53 35 65 16 24 🔳 기타 0

<그림 Ⅲ-2> 유선통신 가입자 현황(2005년)

연도별 유선전화 보급률



자료: 필리핀 통계연보(2005)

자료: KADO, Philippine ICT Development Report, 2006.5.

<sup>&</sup>lt;그림 Ⅲ-3>

#### □ 무선통신 시장의 비약적 발전

- 무선통신산업은 현재 필리핀 정보통신산업 중 가장 성장이 빠르고 유망한 분야임. 혁신적인 선불요금제와 문자전송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s: SMS)의 인기를 바탕으로 2005년 현재 무선통 신 가입자 수는 3,250만명, 총인구의 42%가 무선통신을 이용하고 있음.
- 1991년 아날로그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된 무선통신 서비스는 PLDT의 자회사인 PILTEL이 잠시 시장을 독점하였으나, 1993년 통신시장 자유화 이후 SMART, GLOBE, ISLACOM, EXTELCOM 등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1999년에 이르러 GSM<sup>4</sup> 방식이 시장에서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SMS와 연체방지를 위한 선불요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무선통 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됨.
- 2003년 중반 유선통신회사 DIGITEL의 자회사 Sun Cellular가 저렴한 요금을 바탕으로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여 영역을 확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SMART, GLOBE, Sun Cellular가 시장을 삼분하고 있음.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GSM)으로 유럽 전기통신 표준화기관 인 ETSI에서 제정한 디지털 셀룰러 무선통신 시스템 표준임. 1982년 당시 유럽전기통 신표준기관인 CEPT 산하에 설치된 무선통신 기술위원회(Group Special Mobile)의 이름을 따서 GSM시스템이라고 함.

```
<표 Ⅲ-4>
```

#### 연도별 무선통신 가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점유율
DIGITEL	-	732	1,200	1,860	5.3%
EXTELCOM	30	30	14 10		0.0%
GLOBE	6,572	8,800	800 12,514 12,50		35.9%
ISLACOM	1 82	-	-	-	-
PILTEL	1,174	2,867	4,612	4,984	14.3%
SMART	6,826	1 0,08 0	14,596	15,424	44.3%
합 계	15,384	2 2,50 9	32,936	34,778	100.0%

#### □ 인터넷 보급 확산

- 1994년 시작된 인터넷서비스는 최근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으나,
   PC 보급 저하와 유선통신망 보급 정체 등 인프라 미비로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음.
- 인터넷 이용자는 2004년 현재 100명당 5.3명<sup>2</sup>(440만명/7,6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약 70%, 310만여명이 인터넷카페를 이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편, 세계적인 IT 시장조사회사인 Gartner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는 135백만명이고, 2006년에는 266만명까지 중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인터넷시장의 특징은 인터넷카페가 인터넷 보급의 주요
   통로역할을 한다는 점임. 여타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가정 또는 직장이 아닌 인터넷카페 또는 컴퓨터
   센터 등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1996년 수백개에 불과하

필리핀은 후불제 인터넷 시장보다는 선불제 인터넷 시장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인터 넷서비스 가입자 수를 근거로 인터넷 사용인구를 추산하기가 사실상 곤란함.

던 인터넷카페는 2004년말 전국적으로 약 1만 4000개까지 증가하였음.

 - 인터넷 인프라와 관련하여 인터넷 호스트는 2002년 10,000명당
 1.8개에서 2004년 7.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아시아 국 가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한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

<표 Ⅲ-5>

인터넷 인프라 및 사용자 현황(2004년) 3)

인터넷		인터넷		PC		
<u> </u>	인구 10,000명당	사용자	인구 100명당	보급대수	인구 100명당	
65,3907∦	7.91 개	440만 명	5.32 명	368만대	4.46 대	

### <참고 > 필리핀 내 콜센터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

- 필리핀은 인도와 전세계 콜센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필리핀에는 비등록 회사를 포 함하여 130여개의 기업이 6만여개의 좌석\*을 보유하고 사업 을 영위하고 있음. 현재 콜센터 산업 종사자는 3만에서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조만간 종사자 수가 4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기업으로는 Etelecare International Inc., Infnyxx, People Support, C3 Customer Contact Center Inc., Sykes Asia Inc., Contact World, SVI connect, Cquadrant and Immequire Phils. Inc. 등을 들 수 있음.

<sup>3) 2005</sup>년 현재 인터넷호스트는 96,500개, 인터넷 이용자는 78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sup>4)</sup> 콜센터 운영 및 규모는 "좌석(seat)"으로 표시되며, 한 좌석은 2~3교대로 24시간 운영됨.

필리핀이 콜센터 사업 유치에 유리한 점으로는 첫째,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비용 절약을 위하여 자국의 콜센터를 해외 아웃소성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는 점임. 둘째, 콜센터 직원 전문 양성기관을 필리핀 내에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콜 센터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으며, 국민들의 유창한 영 어구사 능력도 장점으로 꼽힘. 셋째, 현재 도심지역의 유선통 신망의 실제 이용률이 50%에 불과한 점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잉여 유선통신망을 저렴한 가격을 활용할 수 있고, 이 통신망은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광통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위성통신 접속에 비해 통화품질 및 비용 측면에서 유리 하다고 할 수 있음.

# 6. 건설업

#### □ 1993~97년 건설경기 호조

- 1993~97년 지속적 경제성장에 힘입어 마닐라 수도권에서는 고급 아파트단지, 오피스건물, 쇼핑단지 등의 건설 붐이 일어나, 동기간 중 건설부문이 매년 약 10% 성장하였음. 특히 건설프로젝트에 대 한 민간금융 활성화가 건설부문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97 년에는 민간건설가액이 1,230억 폐소(3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 아시아경제위기 여파로 건설경기 급락

 - 1998년 아시아지역 경제위기 영향으로 급격한 금리인상이 초래되 어 건설경기가 급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동년 중 민간건 설가액이 690억 폐소로 떨어졌으며, 2002년 860억 폐소로 상승하 기까지 건설경기는 답보상태에 있었음. 2003년의 민간건설가액이 다시 800억 폐소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건설경기가 아시아경제위 기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7. 금융서비스업

#### □ 금융산업 발전수준이 인접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 필리핀 금융기관 총자산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아시아에 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아시아경제위기발생 전에 필리핀의 GNP 대비 총통화량이 51.8%인 반면, 말레이시아가 101.1%, 태국은 81.5%로 산출되었음. 이는 동아시아의 여타 인접 국들에 비해 필리핀 금융산업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을 의미하며, 금융산업의 미성숙이 저조한 투자성향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함.
- 1995년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영업을 허용하기 전까지 44년 동안 미국계의 Citibank 및 Bank of America, 영국계의 HSBC 및 Standard Chartered Bank 등 4개 외국은행을 제외하고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영업을 전면 금지한 것이 필리핀 금융산업의 발전 을 저해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수 있음.

### 🗆 금융기관의 현 체제

 - 필리핀은 자산규모가 3,000억 폐소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에서부터 가족경영의 소규모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42개 (2005년 기준) 상업금융기관이 있음. 필리핀토지은행(Land Bank of Philippines)과 필리핀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은 국영금융기관이며, 필리핀국민은행(Philippine National Bank)은 정부가 지분의 45%를 소유하고 있음.

	단위 : 10억 페소
금 융 기 관 명	자산규모(금액)
Metro bank	586.5
Bank of Philippine Islands	530.0
Equitable PCI Bank	326.2
Land Bank of Philippines	310.9
Banco de Oro	234.0
Philippine National Bank	224.4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210.6
Citibank	198.7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	189.3
Allied Banking	138.4
합 계	4,144.2

<표 Ⅲ-6> 10대 상업금융기관의 자산규모(2005년 기준)

자료:티U Country Profile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영업 허용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0개 외국은행에 영업허가를 발급함. 필리핀 중앙은행은 추가로 10개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발급 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자국상업금융기관들이 경쟁태세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가 영업허가 발급계획을 중단하였음.

- 필리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은 2005년 기준
   으로 총 18개이고,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며 역외금융 운용은
   외국금융기관에만 허용됨. 자산규모에서 10대 금융기관에 속하는
   외국금융기관에는 단지 Citibank 만이 포함됨.
-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Investment Corporation, PDCP
   Bank 등의 민간투자금융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영은행인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는 농업부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금융기관의 재정건전화 추진

- 2002년 12월 특수목적자산관리회사에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양도 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재정상태 건실화를 추진하 였음. 동 법의 시행에 따라 2001년말 19.4%에 이르던 부실채권 규모가 2006년 3월말 현재 8%까지 감소되었음.
- 2006년 4월 동 법상의 양도허용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2008년
   까지 부실채권 규모를 외환위기 이전 시기 5% 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증권시장의 현황

- 1990년 초중반 국제금융계의 이머징마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 및 민영화 추세 등의 영향으로 필리핀 증

81

권시장의 총주식자본금이 1992년 말 3,530억 폐소에서 1996년 말 2조 1,200억 폐소(U\$809억)로 크게 신장할 수 있었음. 그러나 1998년 아시아경제위기의 여파로 중권시장의 총주식자본금이 1996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1998년 9월 종합주가지수 (PHISIX 지수)가 1,082를 기록하였음.

- 1999년 들어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타기 시작하여 동년 9월 PHISIX 지수가 2,487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2000년 들어 Estrada 대통령의 실정 등이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9월 11일 미국무역센터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동년 10월 PHISIX 지수는 993으로 추락함.
- 2003년 12월 Arroyo 대통령의 2004년 대선출마 발표가 중권시장 에 호재로 작용하여 2003년 말 PHISIX 지수가 1,442로 회복되었음.
  2004년 5월 Arroyo 대통령의 대선승리, 재정적자해소 관련 세제개 혁 추진, 경제의 호조 등으로 중시경기는 계속 상승세에 있어 왔으 며, 2005년 중반 대통령 탄핵정국 및 부가세법 시행 관련 논란 등으 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음.
- 그러나 2005년 하반기 이후 재정적자 축소,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의 호재로 인해 2006년 5월 8일 역대 최고 수준인 2,589 지수를
   기록하였고, 2006년 11월 현재 지수가 2,000을 상회하고 있음.
- 한편 2000년에 제정된 증권법이 내부자거래의 방지, 등록기업의 재무자료 투명성 제고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였으나, 증권부문 종사자들의 인맥관계 존중태 도 등이 관련 법규정의 엄정한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어 향후 증권 시장의 확대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참고>	최근 추진된 주요 경제정책
- 2001년 6월	: 전력산업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전력분야 민영화 가 추진되고 기타 정부소유 공기업의 민영화 활성화
- 2002년 12월	: 금융분야 부실채권 해소를 위하여 특수목적자 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부실자산 양도 허용
- 2003년 11월	:정부수입 증대를 위하여 464개 공산품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3~10%에서 5~15%로 인 상. 인상된 세율은 2007년까지 지속
- 2004년 12월	<ul> <li>: 대법원은 외국자본의 광산업 투자가 위헌이라</li> <li>는 판결을 철회함으로써 자원개발 활성화 기대</li> </ul>
- 2005년 1월	: 부채가 과다한 전력산업 민영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공기업인 Napocor(National Power Corporation)의 부채 35.7억 달러를 인수
- 2005년 5월	: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2%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
- 2006년 4월	: 부실자산 양도 허용법안의 시한을 연장

# 8. 소매유통업

#### □ 외국계 유통업체에 대한 소매유통업 참여 불허

- 국내 소규모 소매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계 유통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음. 1999년 기준으로 자동차 소매유통업소 를 제외한 총소매유통업소는 298,764개에 달하였으며, 총 고용 인 원은 120만 명으로 집계됨.
-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걸쳐 마닐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대단위 쇼핑단지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단위의 소매유통구조가 추세로 정착되었음.

# 9. 관광업

#### □ 숙발시설 등 인프라 부족 및 테러위험이 발전의 저해요인

-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가 많음. 숙박시설이 마닐라 수도권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 등 교통망이 충분치 못한 점, 관광객을 테러대상으로 하는 Abu Say yaf 회교과격단체의 준동 등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 하고 있음.

#### 🗆 관광산업의 실적

- 1997년 관광산업 실적이 방문객수 222만 명, 관광수입 28억 달러

를 기록하였으나, 1997~98년 경제위기로 인해 관광산업이 크게 위 축되었으며, 2004년 방문객수가 229만 명에 이를 때까지 1997년 방문객수에 계속 미치지 못하였음. 한편 2004년의 방문객수는 1997년을 다소 초과하였으나 관광수입은 20억 달러로 1997년에 비해 약 30% 감소하였음. 2005년 중 관광 목적 방문객 수는 260만 명으로 점차 중가하고 있는 추세임.

#### □ 필리핀 관광객의 3대 주류는 미국, 한국, 일본

2005년 관광목적 총방문객 중에서 미국인이 20.1% 528천 명, 한국 인 18.6% 489천 명, 일본인 15.8% 415천 명을 기록하여, 3개국으 로부터의 내방 관광객이 전체의 54.5%를 차지함. 현재 중국인 관광 객의 비중은 미미한 상태지만,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표 Ⅲ-7> 주요 관광 방문국별 관광객 비교

단위 : 천명, %

구	분	관 광	객수	전 체 비 중		ᄌᄀᅝᄅ
Т	폰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증감률
한	국	379	4 89	16.5	18.6	29.0
미	국	478	5 28	20.9	2 0. 1	10.5
일	본	382	4 15	16.7	1 5.8	8.6

자료: EIU Country Profile

2005년 상반기 중 필리핀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4만 6,000명
 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이나, 전년동기 대비 중감률은
 138.8%를 기록하여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가능성을 암시함.





#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절차

## 가. 외국인투자 정책

### □ 제도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환경 제공

 - 필리핀에서는 1967년 공업화촉진을 위한 투자우대법(Investment Incentive Act)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1968년 투자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가 설립되면서 외 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틀이 마련되었음.

<참고 >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의 성격

- 외국인투자 촉진, 투자업무의 효율화, 외국인투자의 허가 및 감독 등을 관할하는 기관
- 주요업무는 ① 투자우선순위 작성, ② 외국인투자의 신청접수, 검토 및 승인, ③ 외국인의 필리핀 내 취업을 위한 관리청에의 협조 요청, ④ 외국인투자업체의 투자법규 이행여부 감독,
  ⑤ 등록업체의 인센티브 부여기간 연장 및 중지결정, ⑥ 외국 인의 필리핀 투자 및 사업활동 관리통제, ⑦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 안내 및 정보제공 등임.

- 1980년대 말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 투자에 관한 모든 법령과 인센티브를 통합한 종합투자법 (Omnibus Investments Code : OIC)이 도입되어 외국인투자 관련 조치가 일원화되었음.
- 1991년에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현행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 FIA)이 제정되었으며, 1996 년 3월 필리핀인 해외교민에 대한 투자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 등을 반영하여 내용 일부 개정.
- 1987년의 종합투자법(OIC)에 따라 투자분야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자우선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 IPP)이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중기개발계획(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1999~2004에 의해 농업 발전,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꾀하였음.
- 1992년 8월에는 외국인의 외환송금 및 외환보유를 전면 자유화 하였고, 1994년 5월에는 외국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그 결과 1995년 중 10개의 외국은행이 영업을 개시 하였음.
- 1995년에는 국적 제한조건이 철폐되어 다국적 금융기관의 지분투
   자가 허용되었으며, 1996년 3월에는 소위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이
   축소되었음. 또한, 1998년 2월에는 석유산업의 2단계 규제완화 조
   치가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1999년 11월에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
   부에 관한 조건 등이 명문화되었음.

- 2000년 8월 발효된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에 의해 외국계기업의 주식 공시, 내부자 거래 및 주가조작 등에 관한 감독·규제가 강화됨.
- 최근 필리핀 정부당국은 투자위원회(BOI)를 통하여 고용기회 창출, 자원생산성 증대, 기술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나. 투자 관련 법규

#### □ 주요 외국인투자 관련 법

- 최근 필리핀 정부당국은 투자위원회(BOI)를 통하여 고용기회 창출, 자원생산성 증대, 기술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으로는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1996년 개정), 투자자임대법(Investor's Lease Act of 1993), BOT(Build Operate Transfer)법, 특별경제지대법(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기존의 수출가공지대청법 통합) 등 이 있음.
- 종합투자법(OIC)은 기존의 투자우대법, 수출진흥법 및 외국인 사업 활동규제법 등을 통합화하여 외국인투자 관련조치를 일원화시킴.

- 외국인투자법(FIA)은 OIC의 외국인 투자제한품목 관련내용을 대폭 개정, 투자제한방식을 종래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투자 에 대해 외국인투자 비율을 완전 허용하였음.
- 또한 수출기업의 의무출자비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
   으며, BOI의 사전심의에 의한 외국인기업 설립허용,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않는 기업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등 외국인투
   자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투자자임대법(Investor's Lease Act, 1993년 6월 제정)에 의해 외 국인 토지임대기간이 종전의 최대 50년에서 추가로 25년 재연장이 가능해졌음. 또한 1994년에는 BOT법이 제정되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
- 1995년의 특별경제지대법(SEZA)은 농업, 상공, 관광, 금융, 투자
   및 재정센터로서의 특별경제지대를 개발하여 별도의 세제상 특혜
   를 주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수출가공지대 및 산업공단 등지의
   특별경제지대를 관장하기 위한 특별경제지대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PEZA)이 창설되었음.

#### 🗆 지적재산권 보호법

- 필리핀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Paris Convention(1965년),
   문학 및 예술작품 활동 보호를 위한 Bern Convention (1951, 1997 년), Rome Convention(1984년)의 서명국임.
- 지적재산권 사무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IPO)에서 특허

권, 상표권 및 기술이전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및 규제를 관장하고 있음.

- 특허법(1947년)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0년 간(갱신 불가)이나 의장권의 경우에는 5년간이며, 그 후 2회에 걸쳐 5년간 갱신도 가능하고,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7년간(갱신 불가)만 유효함.
- 상표법(1947년)에서는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부여일로부터 10년
   으로 규정하고 10년간 갱신할 수 있으며, 저작권보호법(1972년)에
   의하면 저작권은 작품의 최초 완성일로부터 발효되고 저작자의 사
   후 50년을 합산한 기간내 보호받으며 국립도서관에 등록하면 배타
   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

## 다. 투자 절차

#### 🗌 투자절차의 개요

- 1991년 외국인투자법(1991년 7월 1일 발효)에 의해 외국인 투자
  시 100% 외국인 지분참여가 허용되고 등록절차가 간소화되었음.
  1996년 10월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의 축소 및 1997년 2월 발효된
  석유정제산업의 규제철폐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
  히 완화되었음.
-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자본금 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첨단시술 도입 등)에는 가능함.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 경우의 신규투자
 는 BOI에 신고할 필요없이 중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나 통상산업부 산하의 무역규정/소
 비자보호국(Bureau of Trade Regula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BTRCP, 개인기업의 경우)에 직접 등록할 수 있음.

### <참고 > 외국인투자법의 투자 인센티브

- 수출형 투자업체 혹은 투자우선계획(IPP)에 의한 품목에 해
   당되는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인센티브 내용: ① 소득세 면제, ② 자본재 및 원부자재 반입
  시 관세 및 내국세 면제, ③부두 사용료, 수출
  세 및 제반 관련요금 면제, ④ 투자철회 보장,
  ⑤ 외국인투자분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징발
  제외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의 외국인투자자는 BOI의 숭인
   을 받아야 하며, 특별경제지대내의 인센티브는 PEZA의 허가를 전
   제조건으로 함. 이 경우 BOI가 정한 형식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사
   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회사등록 신청절차는 원칙적으로 SEC나 BTRCP에 의해 신청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완료되나 실제로는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4~6주 이상이 걸리기도 함.

- 프로젝트를 확장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인센티브를 부여받거나 자본을 중자하지 않는 한 정부당국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프로젝트 확장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반입할 경우에는 중앙은행 (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함.
-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BSP,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보험위원회(Insurance Commission : IC)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석유 및 가스개발 프로젝트 투자는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 DE), 천연자원 탐사 및 잠재적인 공해산업에 대한 투자는 환경 및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S)에서 관장함.
- 기업간 인수·합병(M&A)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신 중권규제 법(Securities Regulation Code, 2000)에 의해 인수·합병 회사는 소액주주에게 주식인수청구권을 제공하여야 함.
- 허가된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직원 채용, 사업부지 선정
   및 공장건설, 기계 및 원자재 수입, 환경저해사업과 관련해서는 별
   도의 구비서류가 요구되며, 투자수익의 과실송금 시 BSP에 신고하
   도록 되어 있고 투자사업 청산시에는 투자사업 허가기관에 청산보
   고를 하면 됨.

#### 🗌 회사설립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는 주식회사로 회사존속기간은 최대 100년
 (최초 50년 인가, 추가로 50년 갱신 가능)까지임. 증권규제법에 의 해 금융기관을 제외한 회사 설립 시 수권자본금의 25% 이상 출자되고 납입자본금의 25% (최소 5,000 폐소)이상만 납입되면 되나, 정책상 외국인의 초기 출자금은 설립당시 전액 납입되어야 함.

-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5인 이상 15인 이하(필리핀 거주자 과반수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공증필)을 SEC에 제출, 등록하면 SEC는 정관을 검토한 후 회사 설립증서를 교부함.
- 법인 설립을 위해 SEC에 제출할 서류로는 회사의 명칭, 회사정관
   및 내규, 회계경리인 진술서, 예금잔고중명서, 은행계좌명 확인서,
   임원/간부직원/주주에 관한 인적사항, 주주의 납세번호 등임.
- 또한, 외국인 투자지분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인센티브 승인중명서(투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환송금중명서, 외국인 거주중명서 또는 법인등록중 사본 등을 BOI에 제출하면 되고, 투자허가기관은 관련서류 검토 후 투자승인 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이외에도 회사설립 신청인은 법률 및 재정상태 등의 승인을 위해 3부의 관련서류를 등록청(Records Division)에 제출해야 되며, 관 할 자치시에 영업신고, 중앙은행에 투자신고, 사회보장공단(Social Security System)에 사업자 등록 등을 하여야 함.
- 회사설립 신청인은 설립증서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주식 의결권, 임원의 자격, 임기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BOI, BSP 및 SEC에 등록함으로써 회사설립 절차가 완료됨. 대부분의 경우 주 주의 의결권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자본금 증자, 회사정 관의 변경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해서는 2/3의 찬성이 요구됨.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11)

외국기업은 SEC에 등록하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SEC는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사본, 본지점간 관계증명서(certificate of reciprocity), 필리핀 거주자 앞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재무제표, 최근 연차보고서, 회사정관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라. 투자 유관기관

## □ 투자유관기관의 기능

-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투자위원회(BOI)의 주관으로 실행되고, 특별경제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에 문의하여야 함. 이밖에 외국인투자 유관기관으로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중권거래위원회(SEC), 국가경제개발청(NEDA)및 노동부 등이 있음.
- BOI는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의와 허가사항을 관장하며 투자 우선순
   위를 결정하고 투자우선계획(IPP)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BOI는 외국인투자 상담실을 개설, 투자절차안내 및 등록업무 등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IPP에 따라
   승인된 투자분의 통계치를 매월 공개하고 있음.
- BSP는 외자도입 및 과실송금의 허가, BOI의 심의를 거쳐 등록허가
   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관계업무를 하고 있고, SEC는
   법인 설립허가 및 주식 공개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PEZA는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지대 등 특별경제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일차적인 허가 및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정보센터(OSAC)는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 투자유관기관의 연락처

-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 BOI)
- o 주소 :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ator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 o Tel: (63.2) 890-1332/897-6682/890-9308
- ○Fax:(63.2)895-3512
- Homepage: http://www.boi.gov.ph
- 외국인투자정보센터(One-Stop Action Centre : OSAC)
- o 주소 :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ator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 Tel: (63.2) 896-7884/7342, 895-8322
- ○Fax:(63.2)895-3521/8322
- 필리핀 경제지대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PEZA)
- ○주소 : 6th Fl, Almeda Building Ⅲ, Roxas Blvd Corner San Luis St, Pasay City
- Tel: (63.2) 551-3454/3455
- ○Fax:(63.2)891-6380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
- 이주소 : Central Bank Bldg, A Mabini St, Malate, Manila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circ$  Tel: (63.2) 524-7011~53
- Fax: (63.2) 523-3461
- o Homepage : http://www.bsp.gov.ph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
- o 주소:SEC Bldg. EDSA near Ortigas Ave, Greenhills, Mandaluyong, Metro Manila
- Tel: (63.2)726-0931~39
- Fax: (63.2)725-4399
- o Homepage : http://www.bsp.gov.ph/home.htm

- 국가경제개발청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 NEDA)

- 이주소 : sa Pasig Bldg, Amber Ave, Pasig, Metro Manila
- Tel:(63.2)631-0945~68
- Fax: (63.2) 631-3747
- Homepage : http://www.neda.gov.ph
- 노동/고용통계국(Bureau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 BLES)
- o 주소: 3rd Floor, Dole Bldg, Gen Luna Corner San Jose St, Intramuros, Manila
- Tel: (63.2) 527-3577/3578
- Fax: (63.2) 527-3579
- 지적재산권 사무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IPO)
- 이주소: IPO Bldg, 351 Senator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 Tel: (63.2) 890-4894/4939, 897-1724
- Fax:(63.2)890-4939
- Homepage: http://www.dti.gov.ph/ipo

96 한국수출입은행

# 2. 투자우대정책

## 가. 일반적 인센티브(세제)

## □ 인센티브 받으려면 BOI 등록 필요

- 필리핀은 고용기회 확대,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기술수준 제고, 경제발전의 기초 제공, 국제경쟁력 배양 및 수출 기여의 기준에 부 합하는 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와 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략적 인 산업으로 분류하는 석유, 석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100%까지 허용하고 있음.
-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종합투자법(OIC)에 의해 규정된 인 센티브를 관장하고 있는 BOI에 등록하는 절차가 요구되며, OIC의 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BOI가 매년 발표하는 IPP에 합당해야 됨.

# 나. 투자위원회(BOI)의 주요인센티브

## □ 금전적 인센티브

- 신규 프로젝트(개척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사업개시일로부
   터 최대 4년(6년)간 부여(단, 국내자원 사용, 종업원대비 자본설비
   비율 충족, 최초 3년간 연간 50만 달러 이상 저축의 경우 추가로 1
   년 연장 가능)
-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 RA 7369에서 규정한 자본설비 수입 시
   관세 면제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 생산제품의 70% 이상 수출 시 수입부품에 대한 면세
- 수출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세 면제 가능, 보세 제조/무역시스템의 수혜
- 비전통적인 제품 수출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각종 세금 및 부두
   사용료 면제

#### □ 비금전적 인센티브

- 설비, 부품, 원자재 수입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
-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독, 기술 및 고문직에 외국인 고용 허용
- 1998년 IPP에 따르면, 투자우선사업으로 수출지향산업 및 사회간 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 이외에도 개별 산업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환경관련 프로젝트 추진, 주택건설, 자동차산업 활 성화, 사회복지사업, 관광 및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BOI에 등록한 기업이 IPP에서 규 정한 산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 수출관세, 부가가치세, 수출 세, 부두사용료, 수출부과금 및 수입관세(생산제품 70% 이상 수출 시)를 면제하고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50%의 세액을 공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위의 경우 신규로 등록된 개척산업(Pioneer Industry)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후 6년간, 비개척산업(Non-Pioneer Industry)에 대하여
   는 4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8년간

면세연장이 가능하며 등록기업이 사업을 확장한 경우 확장분에 대 하여 3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음.

- 한편, 종합투자법(OIC)에 규정된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 해서는 비개척산업일지라도 개척산업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공 장가동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및 공공시설 건설비용 전액 에 대하여 세액 공제함. OIC규정에 따르면 IPP에 제시되지 않는 사 업분야라도 외국인투자자(외국인지분 40%이상인 기업)는 생산제 품의 70%이상을 수출해야일반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음.
- 다국적 기업이 필리핀내 보세창고를 설치, 부품 원자재의 공급기지
   로 활용할 경우 보세창고에 입하되는 수출용 부품, 원자재 및 완제
   품에 대하여 세금부과가 면제되며, 사업운영을 위해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필리핀내로 유입할 경우 법인소득세 면제 및 지적재
   산권 보호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다. 산업별, 지역별 인센티브(투자장려 업종)

- 투자장려산업은 개척산업과 비개척산업으로 구분하여, 개척산업의 경우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 새로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및 식품가공 등 농업원료 가공업, 비재래식 에너지를 생산하거 나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 하고 있음.
- 필리핀의 경우 투자장려업종은 투자위원회가 매년 발표(4월 1일 발표)하는 IPP에 의해 지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위원회가 적극
   우대하고 있는 분야는 수출지향형 프로젝트, 노동집약형 프로젝트,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는 프로젝트, 근로자의 기술향상 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등임.

- 자동차 사업자는 승용차발전프로그램(Car Development Programme : CDP)과 상용차발전프로그램(Commercial Vehicle Development Programme : CVDP)에 의해 자동차 제조 및 완전 조립(Completely Knocked-Down : CKD) 장치의 수입에 있어 독 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음. 한편, 1998년 1월 21일부터 CKD 수 입관세율을 7%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분조립(Semi-Knocked down: SKD) 수입관세율은 자동차 수출비중이 70%이상인 경우 6 개월간 (6개월 연장가능) 3%로 적용되고 있음.
- 가전제품 수출 촉진 프로그램(Progressive Export Programme for Consumer Electric Products : PEPCEP)에 의하면, 가전제품의 70% 이상 수출시 CKD형태의 수입, 잉여금의 재투자를 위한 세금 공제, 기계류, 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 면제를 보장하고 있음.
- 연간 수출액이 50만 달러 이상이고 과거 5년간 의복직물수출위원
   회(Garment and Textile Export Board : GTEB), BSP 및 관세국
   (Bureau of Customs : BC)에서 정한 무역규정에 위반하지 않은
   의복 수출업체는 수출상품의 제조시 수입 원재료의 사용에 관한 통
   상산업부의 검사의무를 면제받음.
- 필리핀 광산법(Philippine Mining Act of 1995) 및 RA 7942에 따라 광산 투자업체는 광물에 대한 물품세를 2~5%에서 1~2%로 인하하였으며, 최대 81,000ha를 채굴할 수 있음. 또한 사업개시 최초 10년 이내에 발생한 순운영손실을 최초 5년간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음.

종합투자법에 의하면, 저개발지역에 입지한 기업에 대하여 개척산 업의 인센티브 부여, 6년간 소득세 감면기간 적용, 주요 인프라스트 럭처 및 공공 편의시설의 이용에 따른 지출의 100% 세금공제, 인건 비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2배)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규정하 고 있음. 투자우선지역은 통상산업부의 지방사무소에 의해 지정되 며, 이 지역은 원자재, 인력, 기술 및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용성 측면 에서 선호되고 있음.

## 라. 투자규제 조치

#### 🗌 개 요

- 1987년 종합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지분참여가 40%로 제한 되었으나 외국기업에 대한 이런 차별적 조항은 1991년의 외국인투 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투자금지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투자우 선계획에 해당되는 사업, 생산량의 최소 7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및 수출가공지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직 접투자(단독투자)가 허용되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를 List A와 List B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List A는 헌법, 특별법 및 국제협약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는 분야로 대부분 금지되고 있고, List B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안전, 국방, 보건, 공중도덕 및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지분소유를 제한함.
- 현지부품 사용에 대하여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투자허가
   시 행정지도 등 현지부품의 사용비율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주요 품목별 현지부품비율 준수기준을 보면, 의류 35%, 여객용 차 량 40%, 트럭 27%, 자전거 51% 등임.

-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은 필리핀인 고용의무가 있으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리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취업이 허용되 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은 등록후 5년간 관리직, 전문기술직 및 고문직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고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한된 기간 내에서 고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자본의 50% 이상 을 투자하는 경우 관리직의 고용기간 연장은 제한받지 않음.
- 기존의 석유산업 규제완화 법안 중 원유 및 정유제품에 대한 3%의 단일 수입관세율은 원유 3%, 정유제품 7%로 차등 적용하려던 법안 이 1997년 11월 위헌판결(공정거래제한)을 받음에 따라 1998년 2 월 의회는 정유업계가 연간 매출액의 10% (40일분의 공급분량)에 상당하는 재고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효화하는 등 외국 인기업의 석유산업 참여를 고취하는 법안을 의결하였음.

## □ 지분소유 제한

-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업종

## <List A>

• 지분소유 금지 업종 : 협동조합, 방송매체, 사설경호안전기관, 소매 업, 전문면허를 요하는 서비스업, 소규모 광산 업,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해양자원 이용, 투계 장운영, 핵무기 · 생화학무기 · 폭죽 제조



• 25% 지분소유 허용 업종 : 현지 및 해외인력 채용, 정부발주 국내 프 로젝트 (BOT 또는 국제입찰방식 제외)

3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광고업

• 4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쌀·옥수수 경작업, 공익시설의 운용· 관리. 교육문화체육부에 등록한 교육기 관, 심해 상업어선 운영, 공기업에 대 한 물자조달업, 부동산 소유(천연자원 의 개발·이용), BOT 프로젝트의 관리 (공익시설 프랜차이즈)

<List B>

- 최대 6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SEC에 의해 규정된 금융업, SEC 에 의해 규정된 투자업
- 최대 4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화기 및 폭발물(필리핀 국립경찰 의 사전허가 필요), 군수 및 우주사업(국방부 사전허가 필요), 공중도덕 및 보건 위해사업,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이하의 국내영 업기업, 첨단기술 보유 또는 상근종업원 50명 이상이면서 납입자 본금이 최소 10만 달러인 국내영업기업 (자료: EIU, Country Commerce)
- RA 8179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용하였음. 또한 기존의 List C를 폐지하고 시민권이 없는 필리핀 내 거주민들의 투자권리 를 확대하였으며, 중소규모기업의 범위를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50 만 달러(FIA 규정)를 2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였음.



- 1997년 10월 Investment Houses에 대한 외국인의 의결주주 한도 를 최대 51%(1973년 투자회사법)에서 60%로 허용한 데 이어, 1998년 2월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Finance Company에 대 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40%(1969년 Finance Company Act 및 List A)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외국인 지분소유가 제한되고 있는 분야는 2년마다 국가경제개발청 (NEDA)에 의해 외국인투자제한품목(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FINL)으로 지정됨.

## □ 부동산 취득 제한

- 플랜트 및 빌딩 건축, 토지 개량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우선 주택토지사용규제위원회(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의 허가서(1~2주 소요)를 받고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 됨.
- 1987년 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필리핀인
  의 참여지분이 60% 이상인 사업체만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에게는 임차만 허용되며 임차기간은 최대 50년(1993년 6
  월에 발효된 투자자리스법에 의해 기존의 25년에서 2배로 확대)이
  고 추가로 25년간 연장할 수 있음.

# 3. 외국인투자 여건

# 가. 무역제도

## □ 수출입제한

- 필리핀은 산업경쟁력의 배양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무역자유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공업화 및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산업의 육성에 주력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수출신용 확대, 수출절차의 간소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 당국은 1986년 IMF 및 세계은행의 권고로 수입자유화 계획을 마련, 5만 달러 이상의 기계류 수입 시 공급자의 신용제공 의무의 폐지, 시중은행의 수입예탁금 자율결정, 투자위원회 등록기업의 자 본재 수입 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입규 제 완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음.
- 수출시 과학실험 목적을 제외하고는 소관 정부기관의 수출허가를 득 해야 되고 전략물자와 공업화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수출은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알바니아, 앙골라, 이집트, 라오스, 리비아, 몽골, 모잠비 크, 미얀마, 북한에 대한 수출은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인 필리핀 국제 무역공사(PITC)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정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수출 품목의 리스트는 Export Assistance Network가 관리함.
- 1981~94년간 2,7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을 철폐한 수 입자유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1996년 4월의 RA 8178에 의해

옥수수, 설탕, 가금, 가축, 비료 및 사료 등의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수 량제한을 모두 폐지하는 등 대체적으로 상품 수입이 자유로운 상태임.

- 수입시 정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쌀, 필수 화학제품, 시안
   화 나트륨, 페니실린, 석탄, 폭발물 제조용 화학제품, 살충제, 자동차
   와 그 부품 등임.
-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수입 신고서, 상업송장(견적송장), 원산지 중명서 및 선하증권
  - 취소불능 L/C, 은행 지급보증서(창고증권) 및 수입화물 적하목록
  - 관세청(소관부처)에서 요구하는 관계서류
- 신용장(L/C) 거래는 500달러 이상의 물품수입시 요구되고 있으며, 인
   수도어음(D/A) 및 당좌거래에 의한 지급기한은 일반적으로 3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관세국(Bureau of Customs)이 자동세관운영시스템(Automated Customs Operating System)을 통해 수입통관을 운영하고 있음.
  동 시스템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 품목을 분류
  : 저위험 품목은 그린라인(통관 2시간), 중위험 품목은 옐로우라 인, 고위험 품목은 레드라인(통관 4일). 그러나 실제로 고위험 품

목의 경우 통관 검사가 20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수입품의 라벨링에는 원산지, 브랜드, 트레이드마크, 물리적 · 화학
 적 구성성분, 중량이나 크기, 제조업자의 주소 등의 정보가 필수적
 으로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반시에는 5,000페소의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

#### □ 관세제도

- 1981년 이후 포괄적인 관세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4,353개 품목에 대한 관세구조의 단순화와 균일화를 위해 관세분류를 7단계 에서 4단계로 줄이고 관세수준도 10~50%에서 10~30%로 인하 하였음.
- 수입금액이 1,0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L/C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L/C 개설시 수입자는 수입관세 전액과 선급판매세 (수입금액의 25%)를 납부하여야 함.
- 수출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또는 관세
   환급을 하는 영세율(zero-rated)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세는 면제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1991년에 아세안 역내 지역통합
   의 단계로 결성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1993년 1월 공동
   유효특세관세(CEPT)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 관세인하
   합의에 따라 관세율을 최종 0~5%까지 인하하고 비가공 농산물도
   관세인하 대상품목에 해당됨.
- 또한 1994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2020년 이후 역내 무역자 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 Bogor 선언에 의하면 역내 선진국은 2010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신흥투자국 (Emerging Markets)에 대해서는 WTO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유예할 예정임.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특별경제 지대(Special Economic Zone)

① 수출 인센티브

- RA 7844(일명 'Magna Carta for Exporters' )에서는 수출생산에 사용되는 수입재의 L/C 개설전 수입관세 및 조세부과 면제, 수출제 조에 투입되는 자본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 면제, 생산 및 포장을 위한 수입원자재에 대한 5년간 세액공제 등의 특혜를 수출산업에 보장하고 있음.
-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 : EPZ) 소재기업에 관한 인센티브 조치를 포괄한 RA 7916은 특별경제지대에 소재한 수출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4년 → 8년)
  - 수입 자본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 관세 및 조세부과 면제
  - 소득세 감면기간 경과 후 국세 및 지방세 면제(총수익의 5%를 특 별세 명목으로 납부)
  - 수입대체를 위한 세액공제 시행
  - 부두사용료, 수출세, 수출부과금 및 수수료 면제
  - 국내 자본설비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 종업원에 대한 연수비용의 추가공제
  - 외국인투자자(직계가족)에 대한 영주권 부여
  - 외국인 고용권 허가
  - 인건비 추가공제

- 특별경제지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PEZA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우선 입주기업으로서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부속서류도 제출하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② 수출가공지대(EPZ)

- 수출확대, 공업화 촉진,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1970년의 대통령령 제66호에 의거, 현재 Bataan, Mactan, Baguio City, Cavite의 4개 지역에 수출가공지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수출가공지대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수속의 간소화와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부여되며, 경제지대청(PEZA)에서 등록허가 를 받은 후 중앙은 행 및 중권거 래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요구 되고 있음.
- 수출가공지대는 공업단지로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세지역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고 원자재 수입시 관 세가 면제되며 입주기업은 BOI 등록기업과 동일한 투자우대조치를 수혜함.
- 수출가공지대 입주절차(투자신청에서 승인까지 통상 2~3개월 소요)
  - PEZA와의 투자상담, 정보입수 및 신청서 수령
  - PEZA에 관련서류 제출(제출전 회계과에 1.000 폐소 지불)
  - PEZA 2주 내 심사 후 이사회에 심사의견 상정
  - 이사회 2주 내 승인여부 결정
  - 투자승인 즉시 투자자에 통보, 승인 후 20일 이내 등록서에 서명 (등록서 서명시 수수료 1.000 폐소 지불)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11)

- 수출가공지대내 입주 유망업종을 살펴보면, Bataan 지대에서는 리
 스, 통신, 주택, 금융, 선박, 전력 및 용수 산업, Mactan 지대에서는
 중소규모 경공업, Baguio City 지대에서는 통신설비 및 주택 산업,
 Cavite 지대에서는 전력, 용수, 통신설비 산업이 각각 유망한 분야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③ 자유무역지대(FTZ)

- 정부 당국은 1995년 특별경제지대법을 제정하여 산업공단, 수출가 공지대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고하였으며, 수빅만 자유무역항(Subic Bay Freeport : SBF)과 클라크 특별경제 지대(Clark Special Economic Zone : CSEZ)를 특별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 FTZ)로 설정하고 있음.
- 수빅만권역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 SBMA)에 의해 관장되고 있는 수빅만 자유무역항은 Manila 북쪽 80km 지점에 위 치하고 부지는 7,000 ha임. SBF는 천연 심해항구로서 숙련된 영어 구사 노동력, 복합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소, 양호한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및 항구 등의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SBF에 소재하는 기업은 원자재, 자본설비 및 소비재 수입 시 관세
   및 조세부과 면제, 운영소득에 대한 5%의 최종 과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세 및 지방세 면제, 100%의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됨.
- 클라크기지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 : CDC)가 통제하는 클라크 특별경제지대(CSEZ)는 Manila에서 80km, SBF에서 7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1,020ha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CSEZ에는 50Mw의 발전소, 용수, 저장탱크 및 통신시스템이 잘 갖 춰져 있음.

## 나. 외환제도

🗌 외환통제

- 필리핀 은행연합회(BAP)는 1998년 1월 6일부터 외환시장에서의 환율변동제를 적용하여, 하루 중 전일 가중평균환율의 ±6% 변동 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우선 ±4% 변동시 30분간 휴장하고, 거래재개후 ±1% 변동 시 1시간 휴장하 며, 다시 거래재개 후 ±1% 변동시 외환거래를 정지하는 시스템임.
- BSP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통화위원회(Monetary Board)가 외환정책을 수립하고 외환 통제를 하고 있는데, 1992년 9월 경상거 래에 관한 외환규제를 완화하여 거주자의 외화매매와 비거주자의 외화보유를 자유롭게 허용하였음.
-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지만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폐소화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1만 폐소 이상되는 필리핀 폐소화의 대내외 송금 시 BSP의 승인이 요구되며, 외국인(주도)기업이 외환수령액을 폐소화 로 환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 🗆 과실 송금

BSP 또는 저축은 행에 적법하게 등록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완전하
 고 즉각적인 자금송금이 허용되며, 현지은행은 BSP의 숭인없이

외환으로 전환한 투자수익을 매각, 송금할 수 있음.

- 과실송금은 BSP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지분투자의 경우 상업은행
   (보험회사, 석유회사 포함)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정부 또는 상장
   중권투자의 경우 저축은행 또는 중권 중개인에 의해 취급되고 있음.
- 미결 재투자분 또는 과실송금도 일시적으로 은행에 예치될 수 있으
   나 당해 은행은 BSP에 예치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세후 이자수익을
   포함한 최종적인 과실송금은 BSP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 다. 금융제도

□개요

- 외국인은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자본시장으로부터 차입할 수 없으
   나, 외국기업은 현지에서 필요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장기기금 조성은 대개 다국적 금융기관의 대출 및 차관공여국의 공적원조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개발프로젝트 등으로 제한받고 있음.
- 필리핀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특수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지방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 인 투자비율이 4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들 금융기관으로 부터 현지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대출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on Foreign Company's Borrowings : ICFCB)의 승인 을 받아야 함. 그러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필 리핀 현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차입 가능.

- 대규모 금융기관을 Universal Banks('Unibanks')라고 하여 모든 상업 및 투자금융서비스를 담당하며, Metrobank,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Philippine National Bank 및 Equitable PCI Bank 등이 해당됨.
- 1994년 5월의 은행자유화법(RA 7721)은 5년내 완전 상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0개 정도의 추가적인 외국은행의 영업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화당국은 1995년에 기존의 4개 외국은 행에 추가로 10개의 외국은행(지점 및 자회사 형태)의 설립을 허가 한 바 있음.
- 2000년 5월 발효된 일반은행법(RA 8791)은 추가적인 금융자유화 일환으로써 향후 7년 간 외국은행의 무제한적인 국내은행 소유를 허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HSBC, Standard Chartered, Banco Santander, Chinatrust,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등의 은행이 국내은행을 합병하거나, 지점 개설 허가를 획득하였음. 그러 나 7년 이후에는 소유권이 60%로 하향조정 될 예정임.
- 필리핀 수출/대외차관 보증공사가 수개의 상업은행과 협조하여 신 용도가 높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서비
   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Packing Credit과 수출금융을 보증하고 있음(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

## □ 단기금융

- 선도적인 Unibank 및 투자회사(investment houses)에 의한 단기
 대출 및 약속어음 발행이 대표적인 형태의 단기금융 상품이며, 자금



시장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려는 기업은 적법한 은행과 투자회사와 거래하여야 함.

 - 1994년 중앙은행 규정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대출 시 우대지역에 서의 프로젝트 및 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신용보증이 부여되고, 1,0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시 현지은행의 외화로 상환하거나 재대 출할 경우 정부의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득 해야 하나, 단기자본 조성을 위한 대외신용은 자유로운 편임.

## □ 중장기금융

- 중장기금융은 정부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재대출 또는 지분투자 방식을 통해 필리핀 개발은 행(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등의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의해 대부분 취급되고 있음.
- 대부분의 민간 금융기관도 주로 신디케이트 형식을 통해 중장기 금융
   을 취급하고 있으며, 외국은행이 중장기금융 시장에 진입하면서 보다
   혁신적인 금융기법과 대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1992년의 중앙은행의 Circular 1389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지분투 자를 목적으로 현지차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1996년 8월 통화당국은 5% 이상의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이 현 지에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가하였던 Circular 572를 폐지, 1997년 1월부터 시행하였음.

# 라. 조세제도

## □ 조세제도의 개요(감가상각)

- 2004년 10월 필리핀 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제 관 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재정안정화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안정화 계획에 의하면 조세제도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을 때 매년 800억 폐소의 추가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추진 중에 있는 8개 관련법의 정비작업을 완료하는 데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에 재정수입 확대가 대폭 이뤄지기
   는 어려워 보임.
- 또한 1996년 7월 RA 8181에 의해, 관세평가의 기준이 국내 소비 가격('Home Consumption Value': HCV, 원산지 수입상품의 현지 도매가격) 방식에서 송장가격(브뤼셀의 'Definition of Value' 수준)을 기준으로 한 수출가격(Export Value: EV) 방식으로 변경 되었음.
- 1997년 12월 의회는 소득세 체계 및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고 탈세
   및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세무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혁법(RA 8424)을 의결하였음.
-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법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체로 정액법 (Straight-Line Basis)이 행해지고 있으며, 석유생산에 직접 관여된 고정자산은 10년의 내용연수로 이중정률법(Double-Declining-Balance Method)또는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되고 있음.

#### 🗌 소득과세

- 외국기업은 전년도에 필리핀 내 재원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 과세되며, 거주자는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비거주자는 총소득에 대해 과세됨. 과세대상 소득은 총소득에서 통상경비와 필요적 경비를 공제하면 되고 공제경비로는 손실, 부실채무, 이자지 급분, 감가상각비, 세금납부액, 과세소득 5% 이하의 기부금, 연구 및 개발비, 로열티 및 기술용역수수료 지급분을 포함하고 있음.
- 필리핀에서 영업하는 법인은 발생소득에 대하여 35% (또는 총소득
   의 15%)의 법인소득세를 통상 매 분기 회계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회계연도 전체의 총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납부는 회계 연도 마감 후 4개월 째의 15일까지 납부되어야 함.
- 소득세 납부 기한 경과 시, 총 세금의 25%에 해당하는 체납비가
   25%의 연이자와 함께 징수됨. PEZA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세후
   순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경우 15%의 추가 세율(석유 관련 사업의
   경우 7.5%)을 부담하게 됨.
- 과세대상이 될만한 소득이 없거나 손실을 입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계산된 소득세가 최소법인소득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 법인 소득세 (Minimum Corporate Income Tax)로 총소득의 2%를 납부 해야함.
- 특정사업별로 법인소득세는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항공우편서비스를 하는 운수회사에 대해 지불한 필리핀인 총소요 경비의 2.5%, 외국인 상호생명보험회사의 필리핀인 보험가입에 따른 총투자소득 및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로부터 발생한 (이자)



소득의 10%, 역외금융기관(OBUs) 소득의 0%(거주자에 대한 원 화대출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10% 부과)를 적용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의 경우 근로성소득(Active Income)에 대해 계층별로 과세대상소득의 5~30%(1998년부터 순사업소득구분 폐지)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총소득의 15%,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25%의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로열티, 이자(달러화 예금이자 7.5% 적용)등 수취소득에 대하여는 20%의 단일세율로 원천 분리과세함. 내외국법인은 주식판매 시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이 투자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됨.

#### 🗌 소비과세

- 1994년 5월 RA 7716에 의해 제정된 확대 부가가치세(expanded VAT: E-VAT)법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호텔, 레스토랑, 음식제공업(catering), 채권판매, 통신, 운수 및 보험회사의 판매 서비스, 부동산 및 무형자산(저작권)의 판매 및 임대 등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음.
- 종전의 판매세 (Sales Tax), 보상세 (Compensating Tax) 등 간접세 에 대신하여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연간 매출액 50만 페소(E-VAT 발효전, 20만 페소) 이상인 기업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매출액이 10만~50만 페소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를 물 품소비세로 부과하며, 10만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는 비식품 농산물, 해산 및 임산제품
등 1차산품의 판매,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 식품의 수입 및 판매, 인쇄
및 출판, 5,000톤 이상의 선박 수입, 가재도구의 수입, 의료 및 교육
서비스, 1백만 폐소 미만의 부동산 거래, 월간 8천 폐소 미만의 숙박
시설 임대 및 연간 매출액이 10만 폐소 미만인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참고> 부가가치세제 변경내용 요약

-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거래 : 비식용 농산품의 매매,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인쇄 및 출판업 등 (2005년 7월부
   터 면제대상에서 제외)
- 부가세율 인상조건 및 시기 : 2005년 재정적자가 GDP의
   1.5% 초과하는 경우 2006년 1월부터 인상
- 부가세율 인상 및 신설 내역
- 최고율 부가세 인상폭 : 2% (10% ⇒ 12%)
- 기초 식품류는 국내산일 경우 6% 수입품일 경우 8%의 부가 세율 적용
- 전기 및 유류제품에 대한 부가세율은 법시행 1차년 4%, 2차 년 6%, 3차년 8%, 4차년 12% 로 인상
- 세율 체계가 다단계로 구성되어 실제 시행에서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 마. 노동여건

#### 🗌 개 요

- 2004년 노동인구는 3,580만 명이고 실업률은 11.8%로 추산됨. 노 동력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메트로마닐라 13.5%, 남부 Tagalog 13.2%, 중부 Luson 9.7%, 서부 Visayas 9.0% 등으로 지역 간 노동 력 수급의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노동력의 산업별 분포현황은 농업 37%, 산업 16%, 나머지는
   서비스 분야로 추정됨.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까지 매년 850,000
   명의 새 노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임.
- 숙련 노동자의 해외유출이 많고 노동자의 고용은 주로 신문, 광고에 의존하고 있음. 노동력의 평가 측면에서는 낮은 문맹률, 영어 능통,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습득능력 등으로 임금수준에 비해 노동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근로조건 (노동법, 근로시간 등)

- 1976년 2월에 발효된 필리핀 노동법(Labour Code of the Philippines, 대통령령 442)이 모든 노동관련 규정을 포괄하고 있으며, 여성차별 등의 불공평한 관행을 인식하고 파업 및 폐쇄로 인한 난관 협상의 기준을 다루고 있음.
- 제조업의 정규 근무시간은 생산직 주 44~48시간, 사무직 주 40
   시간이며, 시간외 근무는 가능하나 여성근로자의 경우 교통불편과 치안을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 기준월급의 125%, 공휴일 및 주말 근무시 150%(8시간 초과 시 160%), 야간근무(22:00~06:00)시 110%를 주고 있으며, 법정휴가로 5일간의 연가, 45일간의 출산유 급휴가, 15일내의 병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해고 1개월 전 노동부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인건 비 절감을 위한 설비도입으로 해고된 근로자는 근무연수에 1개월 분의 급여를 곱한 금액을, 사업손실 및 중지를 방지하기 위한 해고 시 1개월분의 급여 또는 근무연수에 1/2개월분의 급여를 곱한 금액 과 비교해서 많은 쪽을 각각 수령할 수 있음.
- 정당한 해고 사유로는 노동의무의 습관적인 태만, 사용자(가족, 권한대행자)에 대한 범죄행위, 근로와 관련된 사용자의 적법 명령
   에 대한 부당행위 및 고의적인 불복종, 사기 및 사용자로부터 부여
   받은 신뢰의 고의적 배반, 사용자의 사업손실 및 중지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절약형 설비도입 및 인원조정에 따른 해고 등이 해당됨.

#### 🗌 노동조합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유노동자연합(Federation of Free Workers), 필리핀 노동조합총협의회(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5월 1일 운동(Kilusang Mayo Uno) 등 3대 노동조합 이 결성되어 있음. 명쾌한 노동정책, 노동법의 효과적인 시행 및 향 상된 노동관리규정으로 노사관계는 잘 관리되고 있음. 노사분규는 불공정적인 관행 및 협상 난항으로 대개 촉발되는데,
 과거에는 노동쟁의가 빈번하였으나 최근에는 실업 위협으로 노조
 활동이 사내 중심으로 위축되었고 파업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며, 정부관여에 의한 노동쟁의의 중재비중이 늘고 있음

## □ 임금수준

- 노조파업이 정치적인 동기보다 경제적인 동기로 인해 발생됨에 따라 최근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 노동조합 및 경영주 등 3개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 노동중재 위원회(Tripartite Labor Advisory and Consultative : LACC)의 건 의를 받아 정부가 결정함.
- 법정 최저임금은 생계비 지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산업별로 다르 게 결정되며, 2005년 2월 말 현재 마닐라 수도권 기준으로 하루 최저임금은 비농업부문이 300페소 (타지역 170~255페소)이고 농업부문이 263페소(타지역 170~230페소)임.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 1. 교역 및 투자 현황

## 가.교역 현황

## □ 교역규모 55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유지

- 2006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수출액은 2,882백만
   달러, 수입액은 1,66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1,217백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보임.
- 대필리핀 수출은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원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제 3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필리핀의 수출증가에도 다소 기여.

## □ 2005년 부진했던 대필리핀 교역 회복세

- 대필리핀 수출추이는 2002년 16.4%, 2003년 0.8%, 2004년 13.6%의 중가율로서 다소 등락은 있었지만 중가세를 보였음. 2005 년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이 -4.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함으로써 대필리핀 수출 추이 가 증가세로 반전됨.

-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은 2002년 2.6%, 2003년 5.2%, 2004년
  7.9%, 2005년 9.3%의 증가율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6년
  1~9월의 수입증가율은 -4.0%로 떨어졌음.
- 2005년 대필리핀 수출이 부진한 것은 현지 정치·경제의 불안정
   요인 지속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필리핀 투자진출 기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되나, 최근 필리핀의 경제상황이 호
   전되면서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됨.

## □ 전자부품 등 특정품목 교역집중은 현지투자진출과의 연관 반증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부품, 광물성연료, 산업용 전자 제품 등이며, 2006년 1~9월 기간 중 전체 수출에서 전자·전기제 품의 비중이 35%로 나타나 수출구조가 특정분야로 집중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출 전자부품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반도체, 조립
   용반제품, 컴퓨터부품 등으로 대부분 재수출용 완제품 조립에 사용
   되거나, 바로 제 3국 시장으로 재수출됨.
- 주요 수입품목도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농산물 등으로 구성되며, 2006년 1~9월 기간 중 전체 수입에서 전자부품이 36%를 차지하여 수출과 비슷한 구조를 보였음. 이처럼 대필리핀 수출입구조가비슷한 것은 우리나라기업의 현지투자진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주요 수입 농산물 : 코코넛 및 관련제품

 - 수입 농산물의 대종은 바나나, 코코넛, 코코넛 기름 등이고, 망고, 파파야에 대한 수입규제가 2000년부터 해제되어 수입이 중가하고 있으며, 최근 새우의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표 V -1>

한·필리핀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20	02	20	03	20	04	2005 2006.9.		6. 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기율
수	출	2,950	16.4	2,975	0.9	3,379	13.6	3,220	-4.7	2,882	21.5
수	입	1,867	2.7	1,964	5.2	2,120	7.9	2,316	9.3	2,3 16	-4.0
무역=	수 지	1,083	51.2	1,011	-6.6	1,259	24.6	904	-28.2	566	-

자료 : KO TIS

#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 □ 대필리핀 투자규모 7억 4,765만 달러

-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투자는 1998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
   소하였으며, 1999~2000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1/02년
   급감한 이후 신규 투자진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2006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해외투자금액은 704건, 748백만 달러임.

## <표 V-2> 대필리핀 해외직접투자 현황 (2006년 9월)

단위 : 건,천 달러

신	고	총 투 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036	1,251,183	704	747,65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표 V-3> 대필리핀 주요 투자기업 현황

		단위 :천 달러
현지 법인	신고금액	투자금액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INC.	95,000	91,000
KEPCO INTERNATIONAL PHILIPPINES INC.	90,700	90,700
SAMSUNG ELECTRONICS PHILIPPINES CORP. (SEPCO)	8 2,04 0	81,122
MEKENY KINGDOM RESORT CO., LTD.	54,000	84
RADIX COMMUNICATION INC. (PHILIPPINES)	37,200	45,750
AMKOR ANAM PILIPINAS INC.	33,750	32,824
BEST CHEMICALS & PLASTIC INC.	3 1,00 0	21,200
HANJINPHIL CORPORATION.	29,110	141
PARTHENON INC.	26,800	6,197
SOUTHEAST A SIA CEMENT HOLDINGS INC.	26,732	18,265
DAEWOO CONSTRUCTION PHILIPPINES, INC.	26,643	23,234
POONGSAN MICROTEC PHILS INC.	22,200	13,300
KOPRI INC.	21,500	8,211
LG COLLINS ELECTRONICS MANILA INC.	20,767	19,144
REPUBLIC TELECOMMUNICATIONS HOLDINGS. NC.	20,468	19,835
PHILIPINES SAMSUNG ELECTRONICS COMPANY (PSEC)	20,000	300
MAXON SYSTEMS (PHILIPPINES) INC.	16,150	10,000
DAE DUCK ELECTRONICS PHILIPPINE CO. NC.	1 6,00 0	8,480
PHIL. BXT CORP.	1 5,40 7	8,000
KYUNG KEE PHILS., CORP.	12,450	3,650
YONG SUNG ELECTRONICS INC.	1 0, 10 0	10,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 주요 투자 진출 분야는 전자, 통신장비 등 제조업

- 현지투자진출의 주업종은 전자, 통신장비, 화학 등 제조업 분야이며
   CAVITE, BATAN 등 특별경제지대에 위치한 공단에 주로 입주
- 삼성 전기(주)의 현지 투자법인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INC.가 투자금액 기준으로 규모가 제일 큰 9,100만 달러 이며 대필리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11.4%에 달함.

#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 2006년 10월말 현재 필리핀에 대한 수은의 여신지 원액은 총 1,334
억원으로, 대출이 전체의 95.0%인 1,276억원, 보증이 5.0%인 67
억원을 기록함.

<표 Ⅴ-4> 대필리핀 여신지원 현황(2006.10월 현재)

단위	: 별	백민	원
----	-----	----	---

구	분	승 인 액	집 행 액	여신 잔액	
대 출		143,436	126,746	102,930	
	수출 자금	86,292	69,602	45,787	
	해 투 자 금	52,875	52,875	52,875	
	수 입 자 금	4,268	4,268	4,268	
보 증		5,747	6,691	5,747	
	이행성 보증	5,747	6,691	5,747	
합 계		149,183	133,437	108,678	

<표 V-5> 대필리핀 여신지원 주요 프로젝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젝트명	승인액	여신잔액
직	접 [		출	KEILCO앞 복합 화력발전설비 수출	6 5,63 9	39,693
해 외	투 자	자 금	대 출	(주) 한진중공업 현지법인 설립	47,210	47,210

# 2. 진출확대 방안

# 가. 수출 및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 □ 특별경제지대가 치안상태 및 인력확보에서 유리

- 마닐라 수도권 등 대도시에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집중되
   어 변두리지역은 제반 여건이 열악함. 따라서 정부 또는 민간이
   개발한 수출공단, 산업공단과 같은 특별경제지대 등에 진출하는 것
   이 치안 및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용이해짐.
- 투자진출비용이 다소 적게 드는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불투
   명한 정책운영, 낮은 노동력 수준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음.

#### □ 태풍 등 자연재해 다발지역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 태풍 등 천재로 인한 수해 및 침수 다발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진출 대상지역의 공항, 항만, 도로, 통신, 전력,
 용수 공급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거래상대방의 부족한 신뢰성에 면밀한 대비 필요

- 구매계약서 또는 구두약속만 믿고 상거래를 추진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L/C, T/T 등을 받고 본격
 추진하는 것이 확실함. 또한 거래상담이 느리게 진행된다 해서 조급
 해지는 것은 금물임.

## □ 철저한 하자보수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

- 기계류 등 설비장비를 취급하는 경우 철저한 하자보수 서비스
 (A/S)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일부 업체의 불성실한 A/S
 가 한국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나. 수출 및 투자진출 유망분야

## □ 투자우선계획(IPP)에 포함된 업종에 중점 진출

- IPP에 포함된 업종은 필리핀산 원자재의 활용도가 높고, 필리핀내에서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으며, 수입대체산업으로서 외화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상의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해당업종 : 동광, 망간, 니켈, 크롬 등 금속광, 시멘트 원료, 유황, 석
   탄 등 광산물, 코코넛 등 농산물 가공업 등

#### □ ASEAN 시장진출에 유리한 산업

내수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있고 ASEAN 국가들 사이에 교역 확대
 가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산업 및 화학제품산업

#### □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 단순노동산업: 전자부품 조립, 섬유 등
- 고급인력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개발, 데이터 입력,
   만화영화산업 등

#### □ 필리핀의 쿼터 및 GSP 특혜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선진국의 대필리핀 공여 GSP 혜택, 그리고 AFTA 추진에 따른
 역내 특혜관세의 활용이 가능한 투자유망 분야:
 시멘트, 조선, 철강, 강판, 석유화학, 사료, 자동차부품, 농산물, 식품
 가공, 섬유, 신발, 완구, 포장재 등

# 다. 진출전략 및 정책과제

#### □ 목표시장을 먼저 선정한 다음 투자전략 추진

- 필리핀은 중산층이 미약하고 절대빈곤층이 전국민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내수시장의 구매력이 낮은 관계로 대필리핀 외국인투자
   업체들은 주요 투자 목적으로 제 3국 수출을 택함.
- 따라서 목표시장을 먼저 선정하고 장래 수출확대를 꾀하는 제반
   투자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사전적 노력 필요

- 최근 필리핀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었으며, 2006년 1~9월
   기간에도 566백만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음. 앞으로 예기치 않은
   수입규제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 즉,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수출하는 원부자재가 완제품으로 재생
   산, 제3국으로 수출되어 필리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정책적
   차원에서 미리 홍보할 필요도 있어 보임.

## □ 현지시장 정보의 수집, 제공 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공략에 있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지시장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스템의 구축과 정확한 정보 입수를 통한 효율적
 대응과 우리의 주도력 강화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함.









# 1. ASEAN의 설립 경위 및 배경

# □ 설 립

- 1967년 8월 8일, 방콕

## 🗆 설립 근거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설립 선언
- 통상 "방콕 선언"이라고 부르며, 1967년 8월 5~8일에 개최된 동남
   아 5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됨.

## □ 회원국 : 10개국

 - 설립 회원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1967. 8.8. 설립 회원국)

- 신규 회원국 : 브루나이 (1984. 1.8),

베트남 (1995. 7.28), 라오스, 미얀마 (1997. 7.23), 캄보디아 (1999. 4.30)



#### 🗌 목 적

- 역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을 위한 협력
-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를 통한 역내 정치·경제적 안정 유지
- 역내 국가간 상호 갈등 해소

🗆 설립 배경

- ASEAN 설립 이전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연합(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 ASA)"이 존재하였음.
- 그러나 ASA는 회원국간의 정치적 문제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더욱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ASA 비회원국 인도네시아 간에 도 상호 국가적 이해 갈등이 빚어짐. 따라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를 추가한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 시도됨.
- 1967. 8. 5 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외무부장관들이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방샌에서 만나 3일 동안의 진중한 협의를 거친후, 8월 8일 ASEAN 설립을 알 리는 "방콕 선언"을 채택, ASEAN을 발족시켰으며 ASA는 발전적으로 해체키로 함.

# 2. ASEAN의 기구

#### □ ASEAN 정상회의 (ASEAN Head of Government)

- ASEAN 최고 의사결정기구임.
- 1976년 제 1차 회의 이후 필요시 개최되었으나, 1992년 제 4차 정상회의에서 매 3년마다 공식 정상회의을 개최하고 공식 회의 사 이에 최소한 1회의 비공식 회의을 갖기로 하였음. (1995년 제 5차 회의에서 공식 회의 사이에 매년 비공식 회의을 개최키로 합의)
- 1998년 제 6차 공식 정상회의에서 공식, 비공식을 불문하고 모두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형태로 개최키로 함.

#### □ ASEAN 외무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AMM)

- 1967년 방콕선언에 따라 설립되어 매년 개최됨.
- 각종 각료회의 중에서 최상위급 회의로서 정책 가이드라인의 채택
   및 제 활동의 조정 역할을 수행함.
- 1997년 정상회의에서 필요 시여타 관계 장관의 참석도가능하도록 함.

□ ASEAN 경제장관회의 (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AEM)

- 경제협력문제를 중점 협의키 위해 1977년 정상회의에서 기구화 되었고, AMM과 마찬가지로 매년 개최되며,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됨.
- 산하에 AFTA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정상회의에 AEM, AMM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함.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11)

#### □ 분야별 경제장관 회의 (Sectoral Ministers Meeting)

 특정 경제협력 분야 (에너지, 농업 산림업, 관광, 수송 등)의 장관이 필요시 개최하며 AEM에 보고서를 제출함.

□ 비경제분야 장관회의 (Other Non-Economic ASEAN Ministerial Meetings)

- 보건, 환경, 노동, 복지, 교육, 과학 기술, 정보, 법무 등 비경제 분야의 협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함.
- 비경제분야 장관회의와 AMM과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은 정상회의에
   보고함.

□ 합동 장관회의 (Joint Ministerial Meeting: JMM)

- ASEAN의 활동에 있어 특정 분야간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1987년 정상회의에서 기구화됨.
- AMM과 AEM의 공동의장체제로 운영, 통상 정상회의 전에 개최됨.

□ 상임위원회 (ASEAN Standing Committee: ASC)

- AMM 폐회 후 차기 AMM까지 1년간의 정책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AMM에서 결정된 추진방침에 따라 진행사항을 점검함.
- 차기 AMM 개최국 외무장관이 의장이 되며, 사무총장 및 각 회원국의
   사무국장으로 구성됨.

#### □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of ASEAN)

- AMM의 추천에 의거 정상회의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5년임.
- -1992년 조인된 ASEAN 사무국 설립협정에 의거 사무총장은 ASEAN 각종 활동에 대한 계획, 자문,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연 차보고서를 준비하여 AMM에 제출함.

#### □ ASEAN 사무국 (ASEAN Secretari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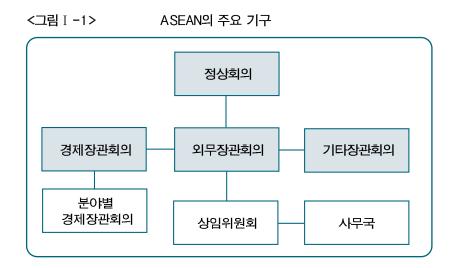
- 1976년 정상회의에서 기구화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산하에 있음.
- 1992년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상회의 합의 이후 기능이 확
   대되어 현재 AFTA국, 경제협력국, 계획조정국 및 협력국의 4개 국
   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기타 조직

- 고급 업무담당자 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 고급 경제업무담당자 회의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SEOM)
- 기타 고급 업무담당자 회의 (Other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 합동 자문회의 (Joint Consultative Meeting: JCM)
- ASEAN 국내사무국 (ASEAN National Secretariats)
- 제 3국 소재 ASEAN 위원회 (ASEAN Committees in Third Countries)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 11)
```



# 3. ASEAN의 역내협력

# 가. 역내협력의 목표

## □ ASEAN Vision 2020

- 1996년 자카르타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의 역내 중기목
   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7년 쿠알라룸프르 비공식 정상
   회의에서 "ASEAN Vision 2020"을 채택하였음.
- 동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2020년까지의 역내 발전 및 협력을 통해 높은 생활수준의 달성
     율 제시하는 미래지 향적 중기계획
  - 경제협력, 정치·안전보장, 문화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지역 협력방안을 제시



#### <부록 I > ASEAN의 개요 및 특징

- 국가 · 기관간의 관계 강화를 중시
- ASEAN의 30년 역사에 대한 점검과 장래 방향 설정

#### □ 하노이 행동계획 (Hanoi Plan of Action)

- 1998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ASEAN Vision 2020"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Hanoi Plan of Action)을 채택하여 실천계획을 구체 화하였음.
- 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거시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위한 긴밀한 정책 협의
  - 과학기술 개발의 촉진 및 정보기술 인프라 개발
  - 사회개발 촉진과 금융·경제위기의 사회적 대비 체계화
  - 인재 육성의 촉진
  - 환경보호의 지속적 추진
  - 역내 평화 및 안전보장 강화
  - 아시아 태평양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 ASEAN 기구와 조직의 개선

# 나 경제협력

□ ASEAN 특혜무역협정 (ASEA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PTA)

- 1977년에 체결되었으며 역내무역에 대한 관세율 인하와 우대관세 적용 품목 확대 지속



#### □ ASEAN 자유무역지역 (ASEAN Free Trade Area: AFTA)

- 1992년 1월 제 4차 정상회의에서 역내무역을 촉진하는 조치로서 'ASEAN 경제협력 중진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이 채택되고, 1993년 1월부터 AFTA는 정식 발효됨.
- AFTA의 주 목적은 역내무역의 활성화와 타 지역으로 부터의 직접
   투자의 유입을 촉진 및 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음.
- AFTA 실현 수단으로서 공통실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 제도는 1993년 1월부터 실행되었는
   바, 총 ASEAN의 관세제도의 90%가 이미 CEPT에 포함되는 등
   ASEAN 역내 무역의 대부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전 ASEAN 생산품에 대한 역내관세는 2002. 1. 1일까지 0~5%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수차에 걸친 계획 수정으로 현재는 최초 회원국 6개국(브루나이 포함)은 2002년까지, 베트남은 2006년, 라오스, 미얀마는 2008년, 캄보디아는 2010 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기타 ASEAN 역내 경제협력

- 산업개발 협력

- ASEAN 산업 프로젝트 (ASEAN Industrial Project: AIP)
- ASEAN 산업협력 계획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AICO)

- 금융협력

- 1999년 ASEAN+3 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2002년 태국 창마 이에서 개최된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ASEAN 스왑협정을 전 회원국 및 한·중·일 간의 이국간 스왑 Repo 거래 네트워크구축키로 합의.
- 기타 에너지, 운수 · 통신, 관광, 지적 소유권 등 분야의 협력이 진행
   중임.

# 다. 정치 · 안전보장 협력

- -1971년 동남아시아 평화·자유·중립지대(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 구상
- -1976년 동남아시아 우호협력 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채택
- 1976년 ASEAN 화합선언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 1995년 동남아시아 비핵화 조약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서명

# 라. 기타 과학기술 분야 등의 협력

과학 기술, 환경, 문화·정보, 사회개발, 마약규제, 에이즈 퇴치,
 국경 범죄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4. ASEAN의 역외국가와의 협력

# 가.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

(ASEAN Post-Ministerial Conference: ASEAN PMC)

- ASEAN 회원국과 역외제국간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상호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SEAN은 70년대 중반 역외 국가들과의 정례협의체제를 구축, 1979년부터는 확대외무장관회의(PMC)로 정례화함.
  - 1974~85년: 호주, 뉴질랜드
  - 1977년 : 일본, 미국, 캐나다, EU
  - 1991년 : 한국( '89년부터 잠정협의대상국)
  - 1995~96년: 인도, 중국, 러시아
- 매년 AMM 직후 협의대상국(확대외무장관회의 대상 역외국) 외무
   장관과 별도 회의를 개최함.
  - 협의대상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EU, 러시아, 중국

#### 🗆 회의 구성

- 전체회의 : ASEAN 10개국과 협의대상 10개국 (10+10 회의)
- 개별회의 : ASEAN 10개국과 역외국 (10+1 회의)



## 나. ASEAN 지역안보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정치 · 아전보장에 대한 범 지역적인 대화 포럼으로 정치·안전보장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회의 구성

-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주요 국가 및 EU 의장국이 참석하며 현재 총 23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 협의대상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EU, 러시아. 중국
  - 기타 국가: PNG, 몽골, 북한 (2000, 7월 가입)

# 다. ASEAN+3 정상회의 (ASEAN+3 Summit Meeting)

- ASEAN은 한국, 중국, 일본과 동아시아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정 상 레벨의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을 기념하여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한국. 중국, 일본을 초청한 바 있고 1998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합동회의 에서 정례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라. ASEAN+3 외무장관회의(ASEAN+3 Foreign Ministers Meeting)

- 1999.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3 외무장관회의의 개최가 결의되었고 2000.7월 ASEAN·PMC 회의시 처음으로 개최되었음.
- ASEAN+3 형태의 회의는 외무장관회의 이외에도 2000.5월 재무 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2001.5월 노동장관회의, 2001.10월 농림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음.

# 5.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 한국과 아세안회원국들은 2006년 5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
   된 한-아세안 FTA 제11차 협상회의에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규
   정을 포함, 한-아세안 FTA의 상품무역협상을 타결.
- 금번 타결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상품무역협정은 5
   월 개최된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AEM Retreat)시 한-아세안 통상장관 간에 정식 서명되었고,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금년 중 발 효될 예정임.
-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던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통상장관들은 상품무역 협정 본문과 그 부속서인 상품자유화방식에 합의한 바 있으며, 금번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 원산지 규정 부속서에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상품무역협정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를 타결함.

- 다만, 태국은 국내정국 사정상 금번 상품양허안 타결에 참여하지 않
   았으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에서의 당사국은 일단 태국을 제
   외한 아세안 9개국과 한국임.
- 한-아세안 양측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 당하는 품목(수입액, 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6 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해 관세를 0~5%로 인하할 예정임.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 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로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을 약 100억불 중
   가시키고, 대아세안 무역흑자를 약 60억불 중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상당수 자동차 및 철강제품 등을 비롯하여 우리 주력 수출상품
   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어 우리 기업들은
   중국 및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아세안 수출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05년 7월 우리보다 먼저 아세안과 FTA를 발효시켰으나, 초민감품목 수입액 상한선이 없어 자동차 및 철강 등 대부분의 핵심 교역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아세안 FTA는 초민감품목에 대한 엄격한 수입액 상한선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자동차와 철강의 경우, 한-아세안 FTA하에서 아세안 국가들 의 양허내용은 중-아세안 FTA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국 양

허 내용보다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현재 발효 대기 중인 일-말련 FTA를 제외하고는 아세안 전체시장을 고 려하면 우리가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우리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장 기간 소폭의 관세인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초민감품
   목 3%에 포함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였음.
- 한-아세안 FTA는 금번 타결된 상품협정 외에 서비스협정과 투자협
   정을 포함하는데, 서비스 및 투자협정 협상은 금년 초에 시작되었으
   며, 금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Republic Act No. 7042

#### (As amended by RA 8179)

#### AN ACT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S, PRESCRIBE THE PROCEDURES FOR REGISTERING ENTERPRISES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Philippines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Title- This Act shall be known as the "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 SEC. 2. Declaration of Policy

- It is the policy of the State to attract, promote and welcome productive investments from foreign individuals, partnerships,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including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in activities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 to national industrializ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to the extent that foreign investment is allowed in such activity by the Constitution and relevant laws. Foreign investments shall be encouraged in enterprises that significantly expand livelihood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Filipinos; enhance economic value of farm products; promote the welfare of Filipino consumers; expand the scope, quality and volume of exports and their access to foreign markets; and/or transfer relevant technologies in agriculture,



industry and support services. Foreign investments shall be welcome as a supplement to Filipino capital and technology in those enterprises serving mainly the domestic market.

As a general rule,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extent of foreign ownership of export enterprises. In domestic market enterprises, foreigners can invest as much as one hundred percent (100%) equity except in areas included in the negative list. Foreign owned firms catering mainly to the domestic market shall be encouraged to undertake measures that will gradually increase Filipino participation in their businesses by taking in Filipino partners, electing Filipinos to the board of directors, implementing transfer of technology to Filipinos, generating more employment for the economy and enhancing skills of Filipino workers.

#### SEC. 3. Definitions. - As used in this Act:

- a) the term "Philippine National" shall mean a citizen of the Philippines or a domestic partnership or association wholly owned by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a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Philippines of which at least sixty percent (60%) of the capital stock outstanding and entitled to vote is owned and held by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a corporation organized abroad and registered as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 under the Corporation Code of which one hundred percent (100%) of the capital stock outstanding and entitled to vote is wholly owned by Filipinos or a trustee of funds for pension or other employee retirement or separation benefits, where the trustee is a Philippine national and at least sixty percent (60%) of the fund will accrue to the benefit of Philippine nationals: Provided, That where a corporation and its non-Filipino stockholders own stocks in a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egistered enterprise, at least sixty percent (60%) of the capital stock outstanding and entitled to vote of each of both corporations must be owned and held by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nd at least sixty percent (60%)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each of both corporations must be citizens of the Philippines, in order that the corporation shall be considered a Philippine national; (as amended by R.A. 8179).
- b) the term "investment" shall mean equity participation in any enterprise organized or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Philippines;



- c) the term "foreign investment" shall mean an equity investment made by a non-Philippine national in the form of foreign exchange and/or other assets actually transferred to the Philippines and duly registered with the Central Bank which shall assess and appraise the value of such assets other than foreign exchange;
- d) the phrase "doing business" shall include soliciting orders, service contracts, opening offices, whether called "liaison" offices or branches; appointing representatives or distributors domiciled in the Philippines or who in any calendar year stay in the country for a period or periods totaling one hundred eighty (180) days or more; participating in the management, supervision or control of any domestic business, firm, entity or corporation in the Philippines; and any other act or acts that imply a continuity of commercial dealings or arrangements, and contemplate to that extent the performance of acts or works, or the exercise of some of the functions normally incident to, and in progressive prosecution of, commercial gain or of the purpose and object of the business organization: Provided, however, That the phrase "doing business" shall not be deemed to include mere investment as a shareholder by a foreign entity in domestic corporations duly registered to do business, and/or the exercise of rights as such investor; nor having a nominee director or officer to represent its interests in such corporation; nor appointing a representative or distributor domiciled in the Philippines which transacts business in its own name and for its own account;
- e) the term "export enterprise" shall mean an enterprise wherein a manufacturer, processor or service (including tourism) enterprise exports sixty percent (60%) or more of its output, or wherein a trader purchases products domestically and exports sixty percent (60%) or more of such purchases;
- f) the term "domestic market enterprise" shall mean an enterprise which produces goods for sale, or renders services to the domestic market entirely or if exporting a portion of its output fails to consistently export at least sixty percent (60%) thereof; and
- g) the term "Foreign Investments Negative List" or "Negative List" shall mean a list of areas of economic activity whose foreign ownership is limited to a maximum of forty percent (40%) of the equity capital of the enterprises engaged therein.



#### SEC. 4. Scope

- This Act shall not apply to banking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governed and regulated by the General Banking Act and other law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entral Bank.

#### SEC. 5. Registration of Investments of Non-Philippine Nationals

- Without need of prior approval, a non-Philippine national,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3 a), and not otherwise disgualified by law may, upon registration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or with the Bureau of Trade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BTRCP) of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in the case of single proprietorships, do business as defined in Section 3 d) of this Act or invest in a domestic enterprise up to one hundred percent (100%) of its capital, unless participation of non-Philippine nationals in the enterprise is prohibited or limited to a smaller percentage by existing law and/or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SEC or BTRCP, as the case may be, shall not impose any limitations on the extent of foreign ownership in an enterprise additional to those provided in this Act: Provided, however, That any enterprise seeking to avail of incentives under the 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 must apply for registration with the Board of Investments (BOI), which shall process such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evaluation prescribed in said Code: Provided, finally, That a non-Philippine national intending to engage in the same line of business as an existing joint venture, in which he or his majority shareholder is a substantial partner, must disclose the fact and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partners in the existing joint venture in hi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 SEC. During the transitory period as provided in Section 15 hereof, SEC shall disallow registration of the applying non-Philippine national if the existing joint venture enterprise, particularly the Filipino partners therein, can reasonably prove they are capable to make the investment needed for the domestic market activities to be undertaken by the competing applicant. Upon effectivity of this Act, SEC shall effect registration of any enterprise applying under this Act within fifteen (15) days upon submission of completed requirements.

#### SEC. 6. Foreign Investment in Export Enterprises

- Foreign investment in export enterprises whose products and services do not fall within Lists A and B of the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provided under Section 8 hereof is allowed up to one hundred percent (100%) ownership.

Export enterprises which are non-Philippine nationals shall register with BOI and submit the reports that may be required to ensure continuing compliance of the export enterprise with its export requirement. BOI shall advise SEC or BTRCP, as the case may be, of any export enterprise that fails to meet the export ratio requirement. The SEC or BTRCP shall thereupon order the non-complying export enterprise to reduce its sales to the domestic market to not more than forty percent (40%) of its total production; failure to comply with such SEC or BTRCP order, without justifiable reason, shall subject the enterprise to cancellation of SEC or BTRCP registration, and/or the penalties provided in Section 14 hereof.

#### SEC. 7. Foreign Investment in Domestic Market Enterprises

- Non-Philippine nationals may own up to one hundred percent (100%) of domestic market enterprises unless foreign ownership therein is prohibited or limited by the Constitution existing law or the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under Section 8 hereof. (As amended by R.A. 8179)

#### SEC. 8. List of Investment Areas Reserved to Philippine Nationals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 The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shall have two (2) components lists; A, and B.
  - a) List A shall enumerate the areas of activities reserved to Philippine nationals by mandate of the Constitution and specific laws.
  - b) List B shall contain the areas of activities and enterprises regulated pursuant to law:
  - 1) which are defense-related activities, requiring prior clearance and authorization from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to engage in such activity, such as the manufacture, repair, storage and/or distribution of



firearms, ammunition, lethal weapons, military ordinance, explosives, pyrotechnics and similar materials; unless such manufacturing or repair activity is specifically authorized, with a substantial export component, to a non-Philippine national by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or

2) which have implications on public health and morals, such as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dangerous drugs; all forms of gambling; nightclubs, bars, beerhouses, dance halls; sauna and steam bathhouses and massage clinics.

"Small and medium-sized domestic market enterprises, with paid-in equity capital less than the equivalent two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200,000) are reserved to Philippine nationals, Provided that if: (1) they involve advanced technology as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r (2) they employ at least fifty (50) direct employees, then a minimum paid-in capital of on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100,000.00) shall be allowed to non-Philippine nationals.

Amendments to List B may be made upon recommendation of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or the Secretary of Health, or the Secretary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endorsed by the NEDA, approved by the President, and promulgated by a Presidential Proclamation.

"Transitory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established in Sec. 15 hereof shall be replaced at the end of the transitory period by the first Regular Negative List to be formulated and recommended by NEDA, following the process and criteria provided in Sections 8 of this Act. The first Regular Negative List shall be published not later than sixty (60) days before the end of the transitory period provided in said section, and shall become immediately effective at the end of the transitory period. Subsequent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s shall become effective fifteen (15) days after publication in a 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 in the Philippines: Provided, however, That each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shall be prospective in operation and shall in no way affect foreign investment existing on the date of its publication.

"Amendments to List B after promulgation and publication of the first Regular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at the end of the transitory period shall not be made more often than once every two (2) years". (As amended by R.A. 8179)



#### SEC. 9. Investment Rights of Former Natural-born Filipinos

- For the purpose of this Act, former natural born citizens of the Philippines shall have the same investment rights of a Philippine citizen in Cooperatives under Republic Act No. 6938, Rural Banks under Republic Act No. 7353, Thrift Banks and Private Development Banks under Republic Act No. 7906, and Financing Companies under Republic Act No. 5980. These rights shall not extend to activities reserved by the Constitution, including (1) the exercise of profession; (2) in defense related activities under Section 8 (b) hereof.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and, (3) activities covered by Republic Act No. 7076 (Small Scale Mining Act), Republic Act No. 3018. As amended (Rice and Corn Industry Act). And P.D. 449 (Cockpits Operation and Management)". (As amended by R.A. 8179)

# SEC. 10. Other Rights of Natural Born Citize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XII, Section 8 of the Constitution

- Any natural born citizen who has lost his Philippine citizenship and who has the legal capacity to enter into a contract under Philippine laws may be a transferee of a private land up to a maximum area of five thousand (5,000) square meters in the case of urban land or three (3) hectares in the case of rural land to be used by him for business or other purposes. In the case of married couples, one of them may avail of the privilege herein granted: Provided, That if both shall avail of the same, the total area acquired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herein fixed.

In the case the transferee already owns urban or rural land for business or other purposes, he shall still be entitled to be a transferee of additional urban or rural land for business or other purposes which when added to those already owned by him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areas herein authorized.

A transferee under this Act may acquire not more than two (2) lots which should be situated in different municipalities or cities anywhere in the Philippines: Provided, That the total land area thereof shall not exceed five thousand (5,000) square meters in the case of urban land or three (3) hectares in the case of rural land for use by him for business or other purposes. A transferee who has already acquired urban land shall be disqualified from acquiring rural land and vice versa ". (As amended by R.A. 8179)



#### SEC. 11.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Standards

- All industrial enterprises regardless of nationality of ownership shall comply with existing rules and regulations to protect and conserve the environment and meet applicable environmental standards.

#### SEC. 12. Consistent Government Action

- No agency, instrumentality or political subdivision of the Government shall take any action in conflict with or which will nullify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any certificate or authority granted hereunder.

#### SEC. 13.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 NEDA, in consultation with BOI, SEC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concerned, shall issue the rule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this Act within one hundred and twenty (120) days after its effectivity. A copy of such rules and regulations shall be furnished the Congres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SEC. 14. Administrative Sanctions

- A person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this Act or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registration or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issued pursuant thereto, or aids or abets in any manner any violation shall be subject to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thousand pesos (P100,000).

If the offense is committed by a juridical entity, it shall be subject to a fine in an amount not exceeding  $\frac{1}{2}$  of 1% of total paid-in capital but not more than five million pesos (P5,000,000).

The president and/or officials responsible thereof shall also be subject to a fine not exceeding two hundred thousand pesos (P200,000.00)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any person, firm or juridical entity involved shall be subject toforfeiture of all benefits granted under this Act.

SEC shall have the power to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as provided herein for any violation of this Act or it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 SEC. 15. Transitory Provisions

- Prior to effectivity of the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this Act, the provisions of Book II of Executive Order 226 and it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shall remain in force.

During the initial transitory period of thirty-six (36) months after issuance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this Act, the Transitory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 I. List A:

1. All areas of investment in which foreign ownership is limited by mandate of Constitution and specific laws.

## ∏. List B:

- Manufacture, repair, storage and/or distribution of firearms, ammunition, lethal weapons, military ordnance, explosives, pyrotechnics and similar materials required by law to be licensed by and under the continuing regulation of th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unless such manufacturing or repair activity is specifically authorized, with substantial export component, to a non-Philippine national by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 2.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dangerous drugs; all forms of gambling; nightclubs, bars, beerhouses, dance halls; sauna and steam bathhouses, massage clinics and other like activities regulated by law because of risks they may pose to public health and morals;
- 3. "Small and medium-sized domestic market enterprises with paid-in equity capital less than the equivalent of Two-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200,000.00), reserved to Philippine nationals: Provided, That if: (1) they involve advanced technology as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r (2) they employ at least fifty (50) direct employees, then a minimum paid-in capital of On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100,000.00) shall be allowed to non-Philippine nationals.

#### SEC. 16. Repealing Clause

- Articles forty-four (44) to fifty-six (56) of Book II of Executive Order No. 226 are hereby repealed.

All other laws or parts of law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are hereby repealed or modified accordingly.

#### SEC. 17. Separability Clause

- If any part or section of this Act is declared unconstitutional for any reason whatsoever, such declaration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other parts or sections of this Act.

#### SEC. 18. Effectivitiy

- This Act take effect from fifteen (15) days after approval and publication in two (2) newspapers of general circulation in the Philippines.



# Approved,

(SGD) JOSE DE VENECIA, JR.

#### (SGD) NEPTALI A. GONZALES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resident of the Senate

This Act, which is a consolidation of Senate Bill No. 1399 and House Bill No. 5029 was finally passed by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March 25, 1996.

CAMILO L. SABIO

HEZEL P. GACUTAN

Secretary General

Secretary of the Senate

House of Representatives

Approved: March 28, 1996

(SGD) FIDEL V. RAMOS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발 행 일	2006 년	11 월	29일
발 행 인	양	천	식
편 집 인	0	재	민
발 행 처	한 국 수	출 입	은 행
우편번호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641			